研究報告
1986. 6 117

農家經濟調査業務 改善研究

金 柄 鎬(首席研究員)
李 壯 鎬(責任研究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머 리 말

農家經濟調査는 農業行政 및 農業政策硏究에 基礎資料를 제공하는 중요한 資料로서 農水産部에서는 1962年 이래로 每年 調査를 실시하여 農家經濟 및 經營의 實態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現行 農家經濟調査는 全國의 經營規模別 統計値만이 集計 公表되고 있으며 一線 調査員들이 記帳하는 農家經濟調査帳簿인 日計簿와 原簿의 調査記入 項目에도 改善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따라서 本硏究에서는 農家經濟調査의 現況을 分析하고 農家經濟調査帳簿 項目分類上의 問題點 및 農家財産, 農家所得評價方法을 分析하여 農家經濟調査業務의 改善方案을 提示하였으며, 簿記的 측면에서의 農家經濟調査 決算過程을 파악하여 農家資金 調達額과 運用額의 不一致原因을 검토하였다.

또한 統計調査에서 問題가 되고 있는 標本誤差, 非標本誤差의 原因을 규명하고 統計利用上 발생되는 問題點들을 개선하여 統計活用의 效率性을 높이고자 하였다. 本硏究가 가능하도록 資料를 提供해 주신 農水産流通經濟統計擔當官室 職員들과 道統計事務所 擔當職員들, 그리고 硏究院의 說問調査에 응답해 주신 一線調査員들의 協助에 感謝를 드리며 本硏究의 結果가 農家經濟調査 業務改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986. 6.

韓國農村經濟硏究院長 金 榮 鎭

빈 면

目　　次

第 1 章　序　　論

1. 研究의 目的 …… 1
2. 研究範圍 …… 2
3. 研究方法 …… 3

第 2 章　農家經濟調査의 現況

1. 農家經濟調査 沿革 …… 5
2. 農家經濟 調査機構 組織 및 業務現況 …… 7
3. 農家經濟 調査內容의 變化 …… 11

第 3 章　農家經濟 性格變化와 農家經濟調査

1. 農業構造變化와 農家經濟性格 …… 22
2. 農家의 槪念變化 …… 23
3. 農家의 階層變動 …… 26
4. 農家의 生産構造 變化 …… 29

第 4 章　農家經濟 調査內容의 分析과 改善方案

1. 農家經濟의 構造分析 …… 33
2. 農家經濟調査 帳簿의 種類와 記帳內容 …… 36
3. 農家經濟 調査帳簿의 項目分類上 問題點과 改善方案 …… 41
4. 農家財産 評價上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47
5. 農家所得 評價上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58
6. 農家의 資金調達과 運用 …… 61
7. 農家經濟調査 統計活用 增大方案 …… 66

第 5 章 要約 및 結論

1. 農家經濟調査의 現況 ····· 75
2. 農家經濟性格變化에 따른 農家經濟調査 ····· 76
3. 農家經濟調査帳簿의 項目分類上 問題點과 改善方案 ····· 77
4. 農家財産의 評價 ····· 79
5. 農家所得의 評價 ····· 80
6. 農家의 資金調達과 運用 ····· 80
7. 農家經濟調査統計 活用增大方案 ····· 81

表 目 次

第 2 章

表 2－1 農家經濟 收入部門 調査項目 …… 12
表 2－2 農家經濟 支出部門 調査項目 …… 13
表 2－3 調査時期別 韓國銀行 農家經濟調査 收入・支出 項目의 變化, 1954～61 …… 17
表 2－4 農協中央會의 農家經濟 收入・支出項目 및 農家所得 算出方法, 1958～62 …… 18
表 2－5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査 收入部門 調査項目의 變化 …… 19
表 2－6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査 支出部門 調査項目의 變化 …… 20
表 2－7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査 家計費 項目의 變化 …… 20

第 3 章

表 3－1 農水産部 農業센서스 對象農家定義 變化 …… 24
表 3－2 調査機關別 農家經濟調査 對象農家 …… 25
表 3－3 耕地規模別 標本農家의 分布變化 …… 27
表 3－4 耕地規模別 農家經濟調査 標本農家와 全國農家의 分布比率 比較, 1984 …… 28
表 3－5 韓國과 日本의 耕地規模別 農家構成比率 比較 …… 28
表 3－6 農家經濟 主要指標의 變動 …… 29
表 3－7 作物別 耕地利用面積 構成比 變動 推移 …… 30
表 3－8 肥料・農藥의 需給推移 …… 31
表 3－9 農機械 保有臺數의 變動 推移 …… 31

第 4 章

表 4－1 年中 購入한 大農機具에 대한 減價償却 與否調査 …… 45
表 4－2 賃借 혹은 賃貸한 大動物 評價與否 調査 …… 46
表 4－3 農家財産分類…… 47
表 4－4 日本의 農家財産分類 …… 48
表 4－5 農業外로 使用되는 建物, 機械, 船舶등 農外固定資産 賣却收入 分類 調査…… 48
表 4－6 大動物 成長에 의한 增加나 減少評價與否 調査…… 53
表 4－7 農家에서 年末에 保有하고 있는 비닐, 골재, 연탄, 유류 등의 在庫生産資材 評價與否 調査…… 54
表 4－8 農家經濟調査 固定資産의 減價償却方法…… 56
表 4－9 農家財産의 減價償却 問題點에 대한 調査員 意見要約 … 57
表 4－10 大動物에 대한 減價償却의 必要性 與否 調査 …… 57
表 4－11 農家所得 및 農家經濟剩餘 構成項目 …… 58
表 4－12 農家所得에 큰 영향을 미칠만큼의 退職金, 祝儀金, 弔儀金 受領農家 與否調査…… 60
表 4－13 農家의 資金調達과 運用, 1984…… 64
表 4－14 經營外 損益項目…… 65
表 4－15 農家經濟 貸借對照表 …… 65
表 4－16 農家經濟 損益計算書 …… 66
表 4－17 農家經濟調査 調査員 勤務年數 …… 67
表 4－18 農家에서 共同購入 使用하는 農機具에 대한 財産評價 및 減價償却 與否調査 …… 68
表 4－19 借入時와 返濟時 評價額差異가 있는 現物負債의 評價 方法 調査 …… 68
表 4－20 調査에 非協助的인 農家比率…… 69
表 4－21 1985 年度 農家經濟調査 主要項目의 精度…… 70
表 4－22 日本의 月別 農家經濟 收支結果 利用狀況…… 72
表 4－23 日本의 年間 農家經濟報告 利用狀況 …… 73
表 4－24 日本의 農家形態別 農家經濟報告 利用狀況 …… 74

圖 目 次

第 1 章

圖 2－1 農家經濟調査體系 …… 8

圖 2－2 農水産部 電算組織 …… 9

圖 2－3 農家經濟調査樣式과 調査內容 …… 10

第 3 章

圖 3－1 農家經濟變化의 槪念圖 …… 23

第 4 章

圖 4－1 農家經濟와 經營, 家計의 關係 …… 33

圖 4－2 農家經濟의 構成 …… 34

圖 4－3 農家經濟調査 計算組織 …… 61

圖 4－4 農家經濟調査의 複式簿記 原理 …… 62

빈 면

第 1 章

序　　論

1. 研究의 目的

農水産部에서는 農家經濟 및 經營의 實態를 파악하고 農業行政 및 農業問題研究에 基礎資料를 제공할 目的으로 每年 農家經濟調査를 실시하여 農家資産과 借入金의 增減變動 및 農家의 經濟構造를 收入과 支出面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現行의 우리나라 農家經濟調査는 全國을 對象으로 하는 經營規模別 統計値만이 集計 發表되고 있으며 統計調査過程에서도 일선 調査員이 작성하는 日計簿와 原簿의 調査記入 項目에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또한 農家概念의 定義, 農家經濟調査項目과 農家經濟調査體系 및 資料蒐集方法, 統計利用上 제기되는 問題들에 대한 綜合的인 檢討가 있어야 하며 調査時期別로 과거의 農家經濟調査項目의 變化, 農家收入, 支出構成項目의 變化 및 農家所得의 算出方法들을 比較 檢討하여 農家經濟調査가 農家經濟活動의 現實을 실제로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1970 년대 都市化, 工業化의 촉진과 産業社會로의 發展과 함께 自給的農業이 商業的農業으로 전환하고 賃貸借農의 확대와 農業生産

性向上 추세에 따라 農家經濟의 槪念 및 性格도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變化에 대응하여 主要農業經濟指標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農家經濟調査의 實質業務도 修正 補完되어야 한다.

本硏究에서는 이러한 農業內部의 여건변화에 따라 農家經濟調査項目의 調整問題를 檢討하고 農家에서의 在庫農産物 現物收入에 대한 價格適用問題, 在庫農産資材, 大動物, 大植物의 評價問題, 減價償却이 필요한 農家財産에 대한 減價償却問題點들을 분석하여 農家經濟調査業務의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統計調査에서 問題가 되고 있는 標本誤差, 非標本誤差의 원인을 규명하고 統計利用上 발생되는 問題點들을 檢討하여 統計活用의 效率性을 높이고 農家經濟調査 業務遂行의 能率化를 期하고자 한다.

2. 硏究範圍

가. 農家經濟調査의 現況分析

農家經濟調査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農家經濟調査의 沿革과 調査機構組織 및 業務內容, 그리고 調査樣式과 資料蒐集方法等을 검토하였으며 調査時期別로 農家經濟調査內容의 變化過程을 분석하였다.

나. 農家經濟性格變化에 따른 農家經濟調査 檢討

農業構造 變化에 따른 農家經濟의 性格變化와 農家의 槪念定義變化를 검토하고 農家經濟調査의 대상인 標本農家의 耕地規模別 分布變化 및 農家의 生産性構造 變化를 분석하였다.

다. 農家經濟調査內容의 分析

經營과 家計面에서의 農家經濟構造를 살펴보고 農家經濟調査에서 조사

하는 帳簿의 種類와 記帳內容을 분석하였다.

라. 農家經濟調査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農家經濟調査 調査員들이 調査上에서 실제로 당면하고 있는 問題點들과 改善方案을 제시하였으며 農家資産의 評價, 農家所得의 評價方法을 分析하고 簿記的 側面에서의 農家經濟調査 決算過程을 파악하여 農家의 資金調達과 運用狀況을 檢討하였다.

마. 農家經濟調査統計 活用增大方案

農家經濟調査資料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統計調査에서 問題가 되고 있는 標本誤差, 非標本誤差를 檢討하고 統計利用上 발생되는 問題點들을 分析하여 統計活用의 效率性을 높이고자 하였다.

3. 研究方法

農水産部의 現農家經濟調査 地區를 중심으로 調査機構, 組織, 調査業務 및 資料蒐集方法을 檢討하고 各 道統計事務所 一線擔當者들의 意見을 청취하였으며 직접 調査業務를 담당하고 있는 全國의 現地 調査員들을 대상으로 說問調査를 실시하여 農家經濟調査上 調査員들이 실제로 당면하고 있는 問題點들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85년의 農家經濟調査資料를 이용하여 主要項目別 標本誤差를 구하였으며 日本의 農林水産省에서 시행하고 있는 農家經濟調査와 우리나라의 農家經濟調査를 比較 檢討하여 調査方法의 差異點을 분석하였다.

第 2 章

農家經濟調査의 現況

農家經濟調査는 農家經濟의 動向과 經濟社會의 諸變遷에 따르는 農業經營의 實態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農業政策樹立과 國民所得推計뿐 아니라 農業問題硏究의 實證的 基礎資料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農家經濟調査는 調査內容이 방대하고 全體農家의 일부만을 調査하여 結果를 집계하는 標本調査이기 때문에 標本誤差뿐 아니라 統計調査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非標本誤差, 즉 調査對象의 누락, 用語定義의 不正確에 의한 質問書意味 잘못 理解, 일부 應答者의 非協助, 資料蒐集不能, 符號記入 錯誤와 其他의 資料處理過程에서 우연히 발생되는 誤差등의 여러가지 原因에 의하여 複合的으로 생기는 誤差들이 항상 존재한다. 다만 그 誤差의 정도가 너무 커서 統計數値의 信賴性에 의심이 가거나 막대한 費用과 人力을 동원하여 蒐集하고 있는 統計業務의 必要性 自體가 問題가 된다면 이것 또한 統計不信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農家經濟調査統計가 農家經濟의 現實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農家經濟調査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調査資料가 어떻게 수집되고 있는가에 대한 檢討와 調査時期別로 農家經濟調査內容의 變化過程을 고찰하고, 農家經濟構造變化에 따른 農家槪念定義의 變化를 살펴보고자 한다.

1. 農家經濟調査 沿革

가. 初期의 農家經濟調査

農家經濟調査는 1944 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어 1962 년 이전까지는 農事院, 韓國銀行, 農協中央會, 農水産部 등 4 개 기관에서 각각 분리 실시하여 왔으나 1962 년 1 월 15 일 법률 제 980 호에 의한 統計法 公布實施와 함께 1962 년 이후부터는 農水産部가 전담하여 農家經濟調査를 실시하고 있다. 農水産部에서 실시하고 있는 農家經濟調査는 1953 년 7 월 1 일부터 당시의 農林部와 韓國銀行이 合同으로 有意選定方法으로 全國 300 戶의 農家를 선정하여 조사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經緯는 먼저 1953 년초부터 韓國銀行調査部가 農家의 營農實態와 生計費를 조사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農家經濟調査를 企劃하였으나 그후 農林部에서도 戰禍와 自然의 災害로 인한 被幣한 農家經濟實態를 파악할 目的에서 韓國銀行과 合同으로 調査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여 調査 명칭을 「農村實態調査」로 하고 1 년간 調査하였다. 調査內容은 營農實態와 生産費 및 農家生計費調査를 目的으로 먼저 月別 조사로는 農家經濟調査日計簿에 의해서 營農收支와 生計收支를 實物去來와 現金去來로 區分調査하는 한편 農家經濟調査原簿에 의하여 年初와 年末에 農家의 財産狀態를 對象農家의 自記式으로 조사하되 對象農家 20 戶씩인 每調査區에 指導調査員을 1 명씩 두어 記帳上의 指導와 諸般事務 연락에 임하게 하였다.

나. 1954 年의 改編

韓國銀行과 合同으로 착수한 農家經濟調査는 1954 년 7 월 1 일을 기하여 각각 分離調査하기 시작하였는데 標本農家의 抽出은 有意標本選定方法으로 全國 33 개 調査地區와 對象農家 330 戶(每 地區當 10 戶)를 선정하고 每調査地區에 1 명의 調査員을 주재시켜 本調査業務를 담당케 하였으며, 33 개 調査地區中 17 개 調査地區(170 戶)는 農家經濟調査를, 나머지

16개 調査地區(160戶)는 農産物 生産費調査를 실시토록 하였다.

그리고 地帶別과 規模別의 特性을 파악하기 위하여 平野, 中間, 山間의 3個地帶와 細農(0.5 ha未滿), 小農(0.5 ~ 1.0 ha), 中農(1.0 ha ~ 2.0 ha), 大農(2.0 ha 以上)의 4계층으로 區分 調査하였다.

다. 1961年의 改編補完

이상과 같은 初期의 本調査는 標本數가 母集團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어서 代表値로서의 信賴度가 낮았으며 標本設計에 있어서도 有意標本選定方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推定誤差를 計算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調査內容 및 方法에 있어서도 미비한點이 허다하여 1961년 7월 1일을 기하여 標本調査內容과 方法을 다음과 같이 改編 補完하였다.

(1) 標本選定方法은 任意標本抽出方法에 의한 層化 三段確率比例 抽出法을 사용하여 전국에 80개층을 設定하였고 全農家의 1,917분지 1標本農家를 任意抽出(Random)원칙에 의하여 抽出하였으며 抽出單位는 農家數에 비례하여 확률적으로 抽出하였다.

(2) 종래 각각 分離調査하던 農家經濟와 生産費의 調査地區 및 標本農家를 一元化시켜 80개地區 1,200戶 標本農家에 대하여 동시에 조사토록 調査內容과 方法을 改編하였다.

(3) 調査內容에 있어서는 종래의 農家生計費調査를 위주로 하던 內容을 지양하고 經營單位인 동시에 消費單位인 農家의 性格을 收入과 支出의 양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調査內容을 개편하였다.

(4) 農家의 規模別特性을 더욱 상세히 比較 파악하기 위하여 종래의 4階層을 더욱 세분하여 0.5 ha 미만, 0.5 ~ 1.0 ha, 1.0 ha ~ 1.5 ha, 1.5 ~ 2.0 ha, 2.0 ha 以上의 5계층으로 구분하여 各 階層의 特性을 分析 比較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農家經濟調査는 1962년 1월 15일 法律 980號로서 公布施行하게 된 統計法에 의하여 統計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1962년 12월 8일자 指定統計 第8號로서 指定公布케 되었다.

라. 1973年 및 1977年 標本変更

1970년 農業센서스結果를 基礎로 하여 1973年에 새로운 標本을 設計하였으며, 基本的인 標本設計方法은 1961년과 동일하나 地域別 統計를 생산하기 위하여 標本數를 종전의 全國 80개 調査地區, 1,182戶의 標本農家를 全國 160개 調査地區, 2,518戶로 標本農家로 확장하였으며, 그 후 1977년에 1975년 간이농업센서스를 기초로 225개 調査地區, 3,375戶 標本農家를 抽出 調査하였다.

마. 1982年 標本変更

1980년 農業센서스結果를 기초로 하여 1982年에 새로운 標本을 設計하였다. 基本的인 標本設計方法은 종래의 活用度가 적었던 地域別 統計대신 地帶別, 營農形態別 統計를 생산할 수 있는 全國 單一 母集團으로 全國 200개 調査地區에서 2,000戶 標本農家를 選定하였다.

2. 農家經濟 調査機構 組織 및 業務現況

가. 農家經濟調査機構 및 業務

本調査를 위한 調査機構는 中央에 農水産部 農水産統計官室 流通經濟統計擔當官室이 있고 地方에는 農水産 道統計事務所와 市·郡出張所 그리고 주재조사원 및 標本農家의 體系로 되어 있으며 擔當業務는 다음과 같다.

1 農水産部 農水産 統計官室 流通經濟 擔當官室

中央擔當機關인 農水産部 農水産 統計官室 流通經濟統計擔當官室은 調査企劃, 調査員의 教育訓練 및 근무동태파악, 調査員의 諸般指導監督, 報告書의 檢討 및 結果分析과 公表 등 諸般業務를 담당하고 있다.

② 農水産道統計事務所 및 市·郡出張所

農水産統計 道事務所 및 市·郡出張所는 調査員에 대한 지도, 監督 및 調査表의 檢討를 함으로써 調査의 正確性을 기하고 있다.

③ 地方駐在 調査員

全國 200개 調査地區에는 각 1명의 調査員이 주재하여 日計簿의 배부, 기장지도 및 회수, 日計簿의 檢討 및 入力, 調査原簿의 整理報告 및 기타 資料蒐集業務에 종사하고 있다.

④ 標本農家

全國 200개 調査地區에는 總 2,000戶의 標本農家가 있어 매일 매일의 去來狀況을 日計簿에 自計式方法에 의하여 직접 記帳하고 있다.

以上의 農家經濟調査機構와 業務는 <圖 2－1>과 같이 要約될 수 있으며 <圖 2－2>는 市·郡出張所에서 조사된 統計資料가 T.T.S 施設에 의하여 中央으로 傳送되는데 이용되는 農水産部 電算組織網을 나타낸다.

즉 農家에서 調査 蒐集된 資料의 入力은 同圖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41개 市·郡出張所에서 T.T.S 報告體系를 통하여 다음달 15일까지

圖 2－1 農家經濟調査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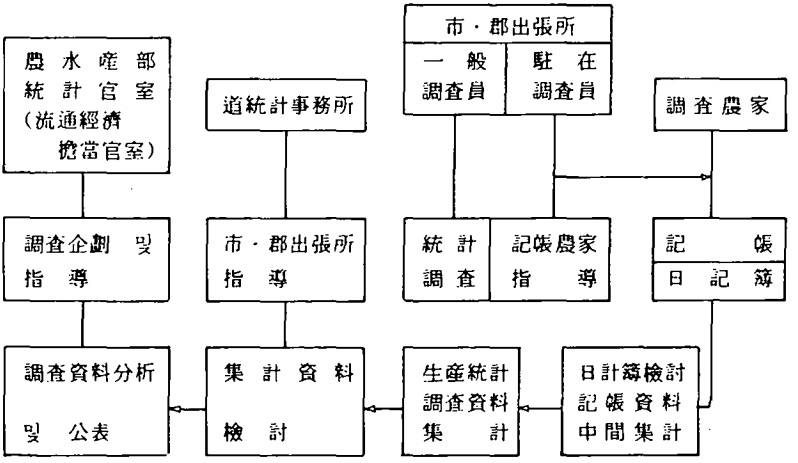

圖 2－2 農水産部 電算組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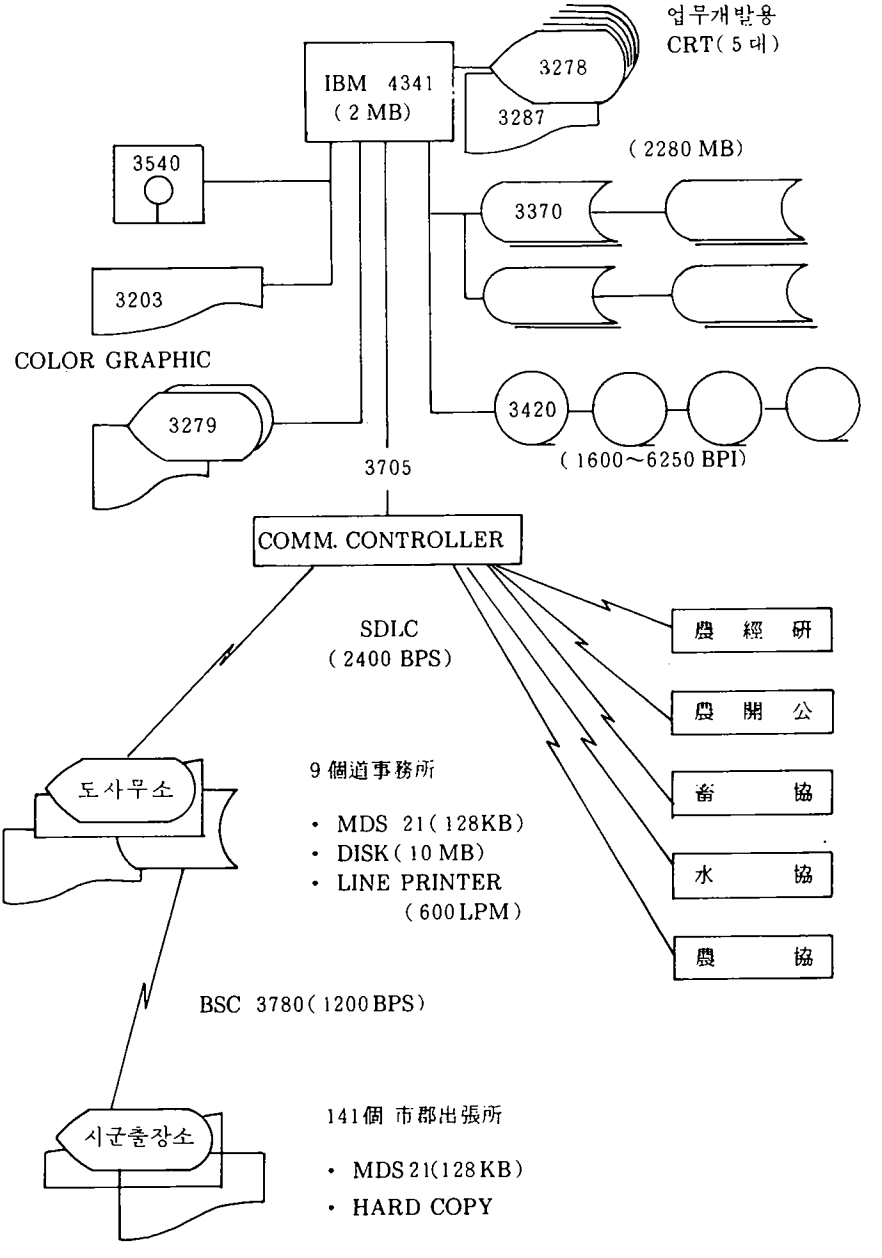

9개 道事務所로 統計資料를 온라인(on-line)으로 送信하면 9개 道事務所에서는 이를 취합한 후 中間集計하며 農水産部 電算室에 온라인으로 傳送한다.

나. 調査樣式 및 資料蒐集方法

現在 農家經濟의 調査樣式은 日計簿와 原簿의 2가지 종류가 있는데 日計簿는 標本農家에 비치되어 그날 그날의 農家經濟의 動態를 農家에서 직접 기장하는 조사장부로서 本調査의 根幹이 된다. 그리고 原簿는 年2回(年初와 年末) 調査員이 직접 실제로 조사하여 記帳하는 調査簿로서 農家財産의 利用實態, 變動狀態, 在庫農産物, 生産資材, 現金, 準現金 및 借入金狀況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圖2-3>은 日計簿와 原簿의 2가지 調査表에서 蒐集되는 農家經濟 및 生産費統計內容을 나타내는 圖이다.

資料蒐集方法으로 調査員은 農家를 방문하여 日計簿記帳을 檢討, 指導하며, 記帳能力이 없는 農家는 調査員이 직접 면접하여 代理 記帳하며 매

圖 2-3 農家經濟調査樣式과 調査內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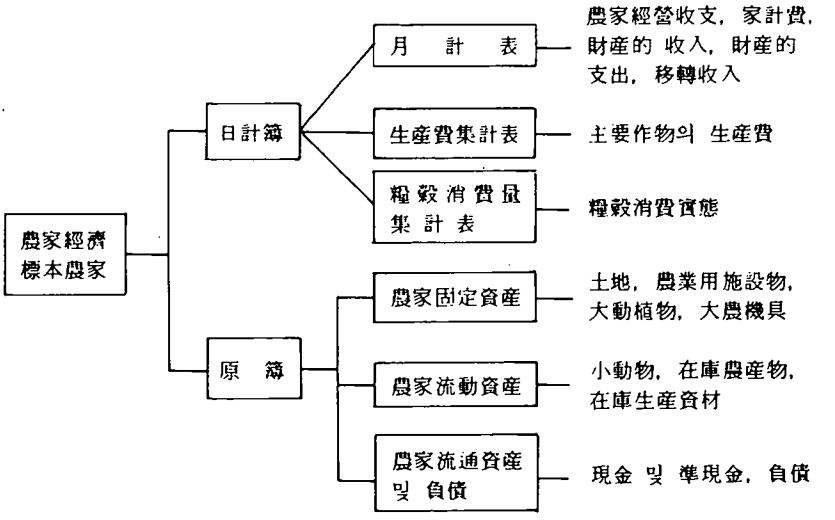

일 記帳된 日計簿는 月末에 調査員이 회수한다. 그리고 月末에 各農家에서 회수한 日計簿는 調査員이 일괄적으로 再檢討하여 완전한 日計簿를 작성한 후 소정란에 收入源泉과 支出用度에 따라 項目符號를 記入하며 項目分類記號의 記入이 끝나면 調査員은 調査地區別로 T.T.S 報告體系를 利用하여 익월 15일까지 道事務所로 送信하며, 年 2回 調査하는 農家經濟調査原簿는 익년 1月末까지 資料를 送信한다.

3. 農家經濟 調査內容의 變化

가. 現行 農家經濟調査項目의 分類

農家經濟調査는 農家經濟 및 經營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主要項目을 調査하는 것으로서 標本農家의 常住 家口員 또는 同居人에 대한 經營主와의 관계, 年齡, 職業, 教育狀態, 勞動能力, 耕地概況 및 就業狀態를 파악하기 위한 標本農家의 概況과 標本農家의 수입, 지출상황 그리고, 勞動種別, 作業別, 家口員의 勞動時間 및 勞動日數, 標本農家가 소유하고 있는 資産 및 負債狀態가 調査되고 있다. 農家經濟調査項目의 分類는 모든 經濟活動을 복식부기의 原理에 따라 記帳토록 하였기 때문에 分類는 일반적으로 商品分類, 收入源泉分類, 種類別 및 用度分類方法等에 의하였으나 현여건과 調査結果의 利用을 감안하여 다소 편리주의를 채택하였다.

1 農家經濟調査 收入部門 調査項目

農家經濟調査 項目中 收入部門은 <表 2 - 1 >과 같이 收入源泉 및 種類別로 事業收入, 事業外收入, 財産收入 및 移轉收入으로 분류하여 각각 項目을 설정하였는데, 事業收入은 農業收入과 農外收入으로 분류하였으며 農業收入은 農作物收入과 農作物 以外收入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農作物收入은 米穀, 麥類, 雜穀, 豆類, 서류, 菜蔬, 特用作物, 果實, 화훼, 기타 농작물 및 農産物 副産物 收入을 말하고 農作物以外收入은 畜

表 2-1 農家經濟 收入部門 調査項目

事 業	收 入	事業外收入	移轉收入	財産的收入
農業收入 農作物收入 農作物以外收入	兼業收入 原始取得物 林産物 水産物 農産加工 商工鑛業 서비스業 其他兼業	勞賃 給料 賃貸料 및 利子 家事雜收入	사례금 송금보조 피증보조 퇴직금	固定資産의 償却 流動資産의 減少 借入金의 增加

産物, 養蠶, 其他 農作物以外收入을 포함한다. 또한 兼業收入은 原始取得物, 林産物, 水産物, 農産加工, 商工鑛業, 서비스業, 其他 兼業收入을 말하고 事業外收入은 自家經營以外의 收入으로서 勞賃, 給料, 賃貸料 및 利子, 家事雜收入 등의 收入이며 移轉收入은 農家의 非經濟活動으로 인한 收入으로서 謝禮金, 송금보조, 피증보조, 퇴직금 등으로 구분하여 記帳토록 한다.

그리고 財産的收入은 固定資産 및 流動資産의 收入과 借入金에 대하여 去來가 發生하였을때 該當金額을 각각의 該當項目에 計算한 것이다.

2 農家經濟調査 支出部門 調査項目

農家經濟調査項目中 支出部門은 <表 2 - 2 >와 같이 用度分類 및 種類別로 事業支出, 事業外支出, 家計費, 租稅公課金, 分家支出 및 財産的 支出로 각각 분류하여 項目을 설정하였는데 事業支出은 農業支出, 兼業支出로 구성되었고 農業支出은 農業을 經營함으로써 支出되는 諸資材費, 勞賃, 修理費 및 賃借料와 其他 農業支出로 分類되는데 種苗費, 肥料費, 農藥費, 農具費, 營農光熱費, 動物費, 飼料費, 養蠶費, 資材 및 原料, 勞賃, 修理賃借料, 搗精料, 農事費, 營農雜支出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兼業支出은 農外事業을 위한 諸費用 및 用品購入費를 말하는 것으로서 原始取得物, 林産物, 水産物, 農産加工, 商工鑛業, 서비스業을

表 2－2 農家經濟 支出部門 調査項目

事業支出		事業外支出	租稅公課	分家支出	家計費	財産的支出
農業支出	兼業支出					
諸資材費 勞賃 修理費및 賃借料 其他農業 支出	原始取得物 林産物 水産物 農産加工 商工鑛業 서비스業	借入金利子 農外就業用 費用 財産利用收 入을 위한 支出	各種 稅金과 公課金	分家時 드는 費用	飮食物費 光熱水道費 敎育, 敎養 娛樂費 住居費 被服및신발 雜費	固定資産의 購入 流動資産의 增加 借入金의 減少

포함하고 있다. 또한 事業外支出은 農業支出이나 農外支出에 計算하기 곤란한 費用을 분리하여 支出하는 費用과 借入金 利子로 區分하여 계산토록 하고 있으며 租稅公課金은 農家에서 부담하고 있는 각종 稅金과 公課金을 말한다. 그밖에 分家支出은 農家에서 分家時드는 費用을 분리하여 계산한 것이며 財産的支出은 固定資産 및 流動資産의 支出과 債務返濟에 의한 借入金의 減少 등으로 去來가 발생하였을 때의 金額을 각각 該當項目에 計算한 것이고 家計費는 農家의 生計에 필요한 農産物 消費量, 購入用品 및 其他 雜費用으로 분류되었는데 飮食物費, 光熱水道費, 敎育·敎養·娛樂, 住居費, 被服 및 신발, 雜費가 여기에 포함된다.

3 農家財産

農家財産은 農家가 소유하고 있는 資産과 負債의 總額을 말하는데 農家는 이들 財産으로 經營活動과 消費活動을 하며 固定資産, 流動資産, 流通資産으로 분류되는 農家資産과 農家가 他人에 대하여 지불해야 하는 借入金, 未拂金 등의 負債項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農家는 經營과 家計가 未分離 狀態에 있기 때문에 建物이나 現金과 같은 資産은 家計用, 經營用으로 兼用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固定資産은 農業經營에서 生産手段으로 사용되는 土地, 建物, 大農機具, 大動物, 大植物 등의 資産을 말하는데 固定資産의 大部分은 每年 사용함에 따

라 또한 時日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그 價値 또는 用役性이 소실되므로 減價償却을 하게 되는데 土地는 그 내용년수가 영구하기 때문에 減價償却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流動資産은 處分하기가 쉽고 流動性이 높으며 그의 用役便益 提供이 보통 1回에 한하는 資産으로 小動物, 在庫農産物, 在庫生産資材가 여기에 속하며 流通資産은 必要에 따라 언제라도 다른 資産을 購入할 수 있고, 債務를 상환할 수 있는 資産 즉 農家保有 現金, 豫貯金, 貸付金, 保險金, 有價證券, 계, 未收入金 등이다.

나. 調査時期, 調査機關別 農家經濟調査項目의 變化

農家經濟調査는 1944년에 처음으로 始作되어 1961년 以前까지는 農事院, 韓國銀行, 農協中央會, 農水産部等 4개 機關에서 各各 分離하여 實施하였으나 1962년 1월 15일 법률 제 980호에 의한 統計法의 公布實施와 함께 1962年부터는 農水産部가 전담 調査하고 있는데 各 機關別 農家經濟調査內容은 다음과 같다.

1 農事院調査(1944 ~ 1960)

農事院의 農家經濟調査는 1944년부터 農事院의 전신인 당시의 農業試驗場에서 시작되었는데 1959年의 調査 實施狀況을 보면 標本農家選定은 行政區域에 의한 8個道(濟州除外)에 特殊農家 10戶, 一般農家 10戶씩 20戶씩을 各各 選定한 外에 中央 農事院이 직접 管轄하는 一般農家 10戶를 選定하여 170戶를 標本農家로 抽出하여 調査하였다.

調査內容은 家族構成狀況, 農家財産과 利用狀況, 農家收入, 農家支出, 特殊作物 生産費, 作物作付方法, 農業勞動에 대한 事項을 調査하여 集計하였다.

2 韓國銀行의 調査(1953. 7 ~ 1962)

韓國銀行의 調査는 1953년 7월 1일부터 300戶 標本農家를 有意標本選定方法으로 抽出하여 1年間 試驗的으로 調査하였으나 그후 本 調査의 重要性을 認識하여 1954年 7月부터는 韓國銀行 調査部가 단독으로 調査

對象農家를 300戶에서 600戶로 확충하였고 1956년 4월 1일부터는 標本選定方法을 종래의 山間地帶, 中間地帶, 平野地帶外에 耕地規模에 따라 0.5 ha未滿, 0.5 ~ 1.0 ha, 1 ha ~ 2 ha, 2 ha以上의 4階層으로 標本을 배정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標本調査에서는 有意選定方法으로 600戶를 抽出 調査하였기 때문에 集計結果에 대한 信賴度가 薄弱하여 이것을 根本的으로 是正하기 위하여 1958년 1월에 標本農家를 全面的으로 改選한 것을 비롯하여 調査內容 및 方法을 大幅 改編하였는데 그 骨子는 다음과 같다. 첫째 標本의 代表性을 높이기 위해서 調査地域을 從來의 20戶單位 30個地域에서 10戶單位 60個地域으로 擴充하였다. 둘째로 調査內容에 있어서 初期調査의 農村生計費調査的 色彩를 止揚하고 經營單位임과 同時에 消費單位인 農家性格의 全貌를 把握하고저 意圖하였다. 즉 從來의 生計支出項目을 238品目에서 199品目으로 減縮시킨 한편 收入에 있어서는 勞賃地代利子等 收入과 被贈補助等 收入을 新設하였고 品目도 從來의 37種을 92種으로 大幅 細分類하였으며 支出에 있어서는 農外事業支出과 租稅公課諸負擔 및 擬制支出을 新設하였고 그밖에 새로운 調査項目으로 農家勞動投下量 施肥量 및 物量收支調査를 添加하여 農業經營의 實態를 反映시킬 수 있는 資料의 蒐集과 集計를 試圖하였다. 세째로, 從來의 集計費目分類를 全面的으로 改編하여 所得的收支와 財産的收支를 明白히 區分하였으며 農家經濟의 地域別 特性을 把握하기 위하여 새로이 京畿, 忠淸, 全羅, 慶北, 慶南 및 江原의 6個 農區로 區分 分析하였다. 上記의 1958年 改編에서는 初期의 農家經濟調査가 農家生産費調査的 色彩가 농후하였던 점을 是正하여 家計面과 經營面을 全貌的으로 把握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亦是 아직도 모든 去來를 處分 時點主義에 立脚한 貨幣價値로 把握하였던 관계로 生産單位로서의 農家를 把握하는데 결함이 있었고 農家經營의 結果인 農業所得 및 農家所得의 算出과 農家財産 變動을 正確히 反映시키지 못하였으며 特히 農家別 決算을 못하였다는 點등 農家經濟의 經營分析面에서 未洽한 點이 많았다. 따라서 所期의 成果를 얻기 위해서 調査要領을 再改編하였는데 改編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主要農産物과 肥料의 生産,

購入, 販賣, 消費, 在庫의 物量的動態를 把握함으로써 營農의 季節性, 農業의 生産性, 農産物의 商品化率, 農家實效價格 및 再生産投資의 實態를 把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標本農家를 1年間 固定시키고 調査資料를 農家別로 集計 決算함으로써 農家의 分類類型을 밝히는 同時에 所得에 의한 階層分類를 비롯하여 其他 여러가지 目的에 適應한 分類集計를 可能토록 하였으며 農家所得도 農業所得과 兼業所得으로 區分하여 各 部門別 經營損益을 밝혔다. 세째, 農業勞動의 特殊性 및 勞動生産性을 把握할 수 있도록 經營部門別 勞動投下量과 그 構成, 賃勞動 및 交換勞動에 대한 資料蒐集을 追加하였다. 네째로 農家의 家計費는 支出國民所得推計와 生産消費水準 및 消費形態의 變動을 把握하는데 국한하여 大幅 그 項目을 縮少하였고 改編의 基本方向인 經營分析과 農家別 決算에 主力하여 集計分析하고 從來의 6個 農區別集計 및 發表는 이를 廢止하였다. <表2－3>은 當時의 農家經濟調査 收入·支出項目의 調査時期別 變化를 나타내는 表이다.

[3] 最幾銀行調査(1958 ~ 1962)

農業銀行의 調査는 現 農協中央會의 전신인 農業銀行에서 1958년 7월부터 全國 630戶의 標本農家에 대하여 動態調査로서 營農 및 家計內容을 調査하여 每月 集計하고, 靜態調査로서 每年 12月末日 現在로 資産과 負債를 調査하였으나 1959年에 調査要領을 일부 修正하여 標本農家로 大幅改善하였다. 1959年 當時의 調査對象農家選定은 全國을 各道別로 8個農區로 大別하고, 各 農區를 耕地率에 따라서 山間地帶, 中間地帶, 平野地帶로 3區分한 다음 各 地帶別을 다시 畓率에 의하여 田作地帶, 混作地帶, 畓作地帶로 分類하여 全國의 市·邑·面을 72個 地帶로 層化하여 63個의 調査對象 市·邑·面을 決定하였다. 다음에 各 農區別로 全標本規模 630戶를 農林部 基本資料에 의하여 細農, 小農, 中農, 大農의 經營耕作面積에 따라 比例配分한 후, 抽出 市·邑·面에 10戶씩 630戶의 標本農家를 選定하였다. 調査內容은 12월 31일 현재로 實施하는 靜態調査와 每日 記載하는 調査簿에 의하여 調査하는 動態調査의 두가지가 있는데 靜態

表 2－3 調査時期別 韓國銀行 農家經濟調査 收入·支出項目의 變化, 1954～61

1954 ～ 57		1958 ～ 61
農業收入	農作物收入：米穀, 麥類, 雜穀, 豆類, 薯類, 菜蔬, 搾油作物 工藝作物, 果實, 其他 農作物 農作物以外收入：양잠, 畜産, 農作加工品, 農業雜收入	作物收入：예년의 農作物收入中 搾油作物, 工藝作物 대신 特用作物이 추가됨. 畜産收入：家禽, 양잠, 양봉, 其他 藁工品收入 其他 農業雜收入
農外事業收入 勞賃地代利子等 收入	林業, 農外雜收入 農業勞賃, 農外勞賃, 常務者給料, 地代利子	兼業收入：農業부대서비스업, 林産物, 商業 및 서비스업, 家內工業, 농업노임, 농외노임, 봉급, 地代利子, 其他收入
被贈補助收入	被贈, 年金, 恩給, 手當, 家事收入	예년과 같음
農家支出	農業支出：종묘비, 비료비, 小農具費, 家畜費, 농약비, 勞賃費, 사료비, 임차비, 光熱費, 材料費, 其他雜費	양잠비, 양봉비, 도정료, 水利費가 추가되고 材料費가 삭제되었으며 임차비는 地代水利, 農地賃借, 機具賃借料로 細分 되었음.
農外事業支出	農外雜支出, 負債利子	농업부대서비스업, 林産物, 상업 및 서비스업, 家內工業, 겸업잡지출
租稅公課	稅金, 公課諸負擔	예년과 같음
生計支出 (家計費)	飮食物費, 住居費, 光熱費, 피복비, 잡비, 보건위생비, 교제비, 教育費, 교양오락비, 임시비, 其他費用	음식물비, 住居費, 피복비, 잡비(의료비, 교육비, 연초비, 증여비, 기타 포함)
農業粗收益		農業收入：農産物在庫增減, 動植物증식, 負債利子 生産資材在庫의 增減
財産的收入	固定資産處分, 有價證券賣却, 預貯金引出, 대여금회수, 보험금, 계금영수, 차입금	예년과 같음
財産的支出	고정자산구입, 유가증권매입, 예저금, 대여금, 보험금, 계불입, 차입금반환	예년과 같음

表 2－4 農協中央會의 農家經濟 收入·支出項目 및
農家所得算出方法, 1958～62 -

農業粗收益 (A)	農作物收入：米穀, 麥類, 雜穀, 豆類, 薯類, 菜蔬園藝類, 特用作物, 藁稈類, 其他
	大植物增減
	農作物以外 收入：養畜養蠶, 農産加工, 其他農作物
	大動物增減
	在庫農作物增減
	種苗費, 肥料費(金肥, 自給費), 小農具費, 養畜養蠶費, 農藥費,
農業經營費(B)	勞賃, 飼料費, 水利費, 諸材料費, 賃借料, 搗精料, 負債利子, 其他, 在庫生産資材增減
農業所得(C)	(A) － (B)
農業以外 收入 (D)	兼業收入：林業, 水産業, 商業, 搗精業, 牛工業, 其他兼業
	兼業以外 收入：勞賃, 俸給, 賃貸料, 利子, 被贈補助, 家事收入 其他
農外事業支出(E)	林業, 水産業, 商業, 搗精業, 牛工業, 其他
農外事業所得(F)	(D) － (E)
農家所得(G)	(C) ＋ (F)
租稅公課(H)	土地收得稅, 雜稅諸負擔
可處分所得(I)	(G) － (H)
家計費(J)	食飲物費, 住居費, 光熱費, 被服費, 雜費 (教育費, 관혼상제, 기타)
農家經濟剩餘 혹은 損失(K)	(I) － (J)
財産的收入	土地賣却, 建物賣却, 動物賣却, 植動賣却, 借入金
	貸與金回收, 其他
財産的支出	土地購入, 建物購入, 大農具購入, 動物購入, 植物購入,
	貸與金, 債務辨濟, 其他

調査는 農家財産狀態調査와 農家文化程度를 調査하였다. 그리고 動態調査에서는 對象農家狀況(世帶員의 構成과 教育程度 및 經營土地), 農家收支, 農家糧穀受拂狀況, 米麥商品化率, 施肥狀況, 勞動狀況, 畜力使用狀況, 農家資金動態, 農業勞賃을 調査하였는데 農家資金動態는 農家資金의 借入處別, 用度別借入狀況等을 調査하는 것이고 農業勞賃은 日雇勞賃, 季節雇勞賃, 年雇勞賃으로 區分하여 現物로 급여된 것도 評價하여 合算하고 있다. 日雇勞賃은 男女別로 區分하여 移秧, 畓除草, 田除草, 畓耕耘, 稻作收穫, 田耕耘, 麥穀收穫으로 區分 調査하였으며 當時의 農家經濟調査項目中 農家의 收入, 支出構成項目과 農家所得算出은 <表 2 - 4 >에서 볼 수 있다.

④ 農水産部의 調査

<表 2 - 5, 表 2 - 6, 表 2 - 7 >은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査 收入 · 支出, 家計費 調査項目의 變化를 나타낸 表로서 <表 2 - 6 >의 農家經濟收入部門 調査項目을 보면 산나물, 들나물, 약초, 지엽 등의 原始取得物의 販賣收入은 모두 兼業收入中 신설한 原始取得物 收入으로 計上되었고,

表 2-5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査 收入部門 調査項目의 變化

	1983 年 以 前	1983 年 以 後
農業收入	農作物 收入, 農作物以外 收入 : 養畜, 家禽, 畜産, 養蠶, 農産加工, 其他	農作物 收入 農作物以外 收入 : 畜産物, 家禽, 養蠶, 其他
兼業收入	林産物, 水産物, 農業서비스, 商工鑛業, 一般서비스, 其他	原始取得物(신설), 林産物, 水産物, 商工鑛業, 서비스(農業과 一般합병), 農産加工(農作物以外 收入에서 項目調整), 其他
事業外收入	勞賃, 給料 및 사례금, 賃貸料 및 利子, 補助(송금보조, 피증보조), 家事收入(가사수입, 기타 잡수입)	勞賃, 給料, 賃貸料 및 利子, 家事收入
移轉收入		사례금, 송금보조, 피증보조, 퇴직금

資料 : 農水産部, 「農家經濟結果報告」, 1985.

表 2-6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査 支出部門 調査項目의 變化

	1983 年 以 前	1983 年 以 後
兼業支出	林産物, 水産物, 農業서비스, 商工鑛業, 一般서비스, 其他	原始取得物(신설), 林産物, 水産物, 商工鑛業, 서비스 (農業과 一般합병), 農産加工, 其他
事業以外支出		(신 설) 借入金利子, 農外취업비용, 財産利用收入을 위한 修理費·수수료
其他支出	分 家 其他(도난, 분실, 재해손실)	分家支出(其他는 家計費에 計上)

資料 : 農水産部, 農家經濟結果報告, 1985.

表 2-7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査 家計費 項目의 變化

	1983 年 以 前	1983 年 以 後
飮食物費	主食物, 副食物, 조미료, 주류, 다과류, 外食費	主食物, 副食物, 조미료, 주류, 과실비, 기호품비, 外食費
光 熱 費	光 熱 費	光熱·水道費 - 水道費, 家計光熱費
住 居 費	주택비, 가구가재비, 기타주거비	주택비, 가구비, 가정용기구, 침구류, 가사소모품
教 育 費	學校教育費	教育, 教養, 娛樂 - 教育費 (종전의 문화비중 교과서 및 참고서 포함), 신문 도서비, 문방구비, 娛樂費
被 服	被服費 - 의복류, 신발, 장신구, 기타(장신구비는 가계잡비에서 計上)	被服 및 신발 - 의복류(외의류, 내의류, 샤스류, 직물 및 실, 기타 피복류), 신발류, 피복 및 신발 서비스
家計雜費	미용, 위생비, 의료비, 문방구비, 문화비(교과서 및 참고서비 포함) 오락비, 교통·통신비, 교제증여, 관혼상제, 연초, 기타	미용, 위생비, 보건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제증여, 관혼상제, 연초, 장신구(피복비에서 분류), 기타(도난, 분실, 재해손실 포함)

資料 : 農水産部, 「農家經濟結果報告」, 1985.

農産加工品의 販賣收入은 農産加工收入으로 計上하고 이를 兼業收入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農業서비스와 一般서비스를 통합하여 서비스業으로 분류하였고 政府나 기타 機關에서 實施하는 農村調査의 代價로 받은 사례금품은 새로 신설된 移轉收入(송금보조, 피증보조, 사례금 등) 項目에 計上하였으며, 기타 年金(一時金 除外) 이장, 모곡등은 기타 給料에 분류하였다. <表 2 - 7 >은 農家經濟 支出部門 調査項目의 變化를 나타낸 表로서 同表를 보면 83 년에 事業外支出項目이 신설되어 事業外 收入을 얻기 위하여 支出되는 費用, 즉 勞賃, 給料를 얻기 위한 專用工具費, 財産利用收入(賃貸料, 配當利子 등)을 얻기 위한 修理費 · 手數料等과 借入金 利子를 事業外 支出項目에 計上토록 하였으며 農産加工收入을 얻기 위한 原料, 專用工具費 등을 計上한 農産加工支出項目이 兼業支出項目에 추가되었다. 그리고 農業서비스와 一般서비스支出을 統合하여 서비스支出項目으로 분류하였고 原始取得物收入을 얻기 위한 專用工具費, 運送費等을 原始取得物 支出項目에 計上하였으며 83 년 이전에는 其他 支出에 分家支出과 其他(도난, 분실, 재해손실등)가 포함되었으나 이중 其他는 家計費中 家計雜費에서 計上토록 하였다. <表 2 - 7 >의 家計費項目을 보면 家計費는 經濟企劃院에서 실시하고있는 都市家計收支와 比較可能하고 農政에 필요한 資料를 제공할 수 있으며 向後 農家購入價格 調査時 적용할 加重値 計算基準이 될 수 있도록 家計費 支出項目을 세분화하였다.

第 3 章

農家經濟 性格變化와 農家經濟調査

1. 農業構造變化와 農家經濟性格

農家經濟調査의 대상이 되고 있는 農家經濟는 農業構造의 變化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零細小農構造를 가진 韓國農業은 1962 년부터 시작된 經濟開發計劃의 실시로 農業構造面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非農業部門의 보다 높은 成長에 따라 무엇보다도 農業生産與件이 크게 변화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農業生産에 필요한 資源인 勞動力 및 耕地의 流出내지 轉用으로 인하여 生産要素의 雇傭構造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허신행, 1985).

다시 말해서 自給自足的 家族經濟라고 특징지울 수 있는 기존 韓國의 小農經濟는 産業化의 빠른 진행 속에서 資本主義的 市場經濟에 편입되는 현상으로 나타나 自己所有土地에 의존하는 自營的 小農經濟體制속에서 賃貸借農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오호성 1981, 김영진외, 1982 : 김성호 1983).

이러한 多角的인 農業生産이 市場指向的이고 전문화된 商品農業生産으로 바뀌어 가면서 農家 및 農業人口의 격심한 감소와 함께 農業의 機械化, 資

圖 3－1 農家經濟變化의 槪念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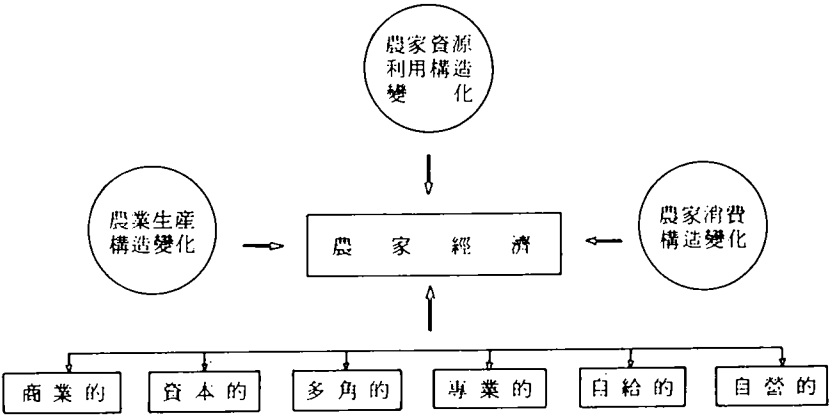

本化가 확대되면서 農家經濟의 性格에도 많은 質的 變化가 나타나고 있다.

즉 農家經濟의 性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3가지面에서 보면 다음 <圖3－1>과 같이 農業生産構造變化, 農家의 資源利用構造變化, 農家消費構造의 變化로 인해 農家經濟의 性格이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農業內部의 여건변화로 인한 農家經濟의 槪念 및 性格變化에 대응하여 主要 農業經濟指標는 生産하는데 사용되는 農家經濟調査의 實質業務도 수정·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農家의 槪念變化

現行 農家經濟調査에 있어서 對象農家는 80年 農業센서스 農家定義에 부합되도록 耕地面積(논, 밭, 수원지) 10a 이상을 경작하는 農家와 畜産農家(大家畜 1마리 이상, 中家畜 3마리 이상, 小家畜 40마리 이상, 家禽 30마리 이상, 또는 꿀벌 5통 이상을 사육하는 農家)로 규정하고 支出部門에 對한 調査가 불가능한 學校, 試驗場, 宗敎團體 等의 準農家는 그 대상에서 除外하였다. <表3－1>은 農水産部의 農業센서스에서 定義

表 3－1 農水産部 農業센서스 對象農家定義 變化

	1960 農業國勢調査	1970 農業센서스	1980 農業센서스
個人農家	소유여하를 불문하고 경지(답, 전, 수원지) 300평 이상을 직접 짓고 있는 가구	○ 경지 300평 이상을 직접 경영 또는 경작하는 가구 ○ 고등원예, 특작을 각각 100평이상 과수나 묘목은 각각 200평이상 재배하는 가구 ○ 대가축(한우, 젖소, 고기소)을 3마리이상 직접 사육하는 가구 ○ 중가축(돼지, 면양, 사양)을 3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 소가축(토끼) 40마리이상 가금(닭, 오리, 거위, 칠면조) 30마리이상 사육하는 가구 ○ 꿀벌을 5군이상 치는 가구 ○ 누에씨 12g 이상을 소잡하는 가구 ○ 농업을 경영하지 않고 연간 90일이상 임금 농업노동에 종사하였거나 가구원중 어느 한사람이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 농업노동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가구	○ 소유권을 불문하고 논, 밭, 수원지 등을 300평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고등원예나 특용작물을 각각 100평 이상 또는 과수나 묘목을 각각 200 이상 재배하는 가구 ○ 대가축(한우, 젖소, 고기소)을 1마리이상 사육하는 가구 ○ 중가축(돼지, 산양, 면양)을 3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 소가축(토끼) 40마리이상, 또는 가금(닭, 오리, 거위, 칠면조)등을 30마리이상 사육하는 가구 ○ 꿀벌을 5통이상 치는 가구 ○ 누에씨 12g(1상자)이상 소잡한 가구 ○ 연간 총수입중 복합경영한 농업수입이 위의 각호별 수입보다 많은 가구
準農家	농가에서 정한 규모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협동조합, 학교, 종교단체, 정부 기타 4개크럽, 고아원, 회사, 기타단체	동 일	농가정의에서 정한 규모이상을 직접 경작 또는 사육하는 학교 정부기관 종교단체 기타 기관단체
專業農家	－	농업만 종사하던가 연누계일수 30일 미만 농사이외의 돈벌이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가구	동 일
兼業農家	－	돈벌이를 위해 농사이외 다른일 또는 영업에 연누계일수 30일이상 종사하는 가구	동 일

資料 : 農水産部, 「1960 農業國勢調査」, 1970, 1980 農業센서스

表 3－2 調査機關別 農家經濟調査 對象農家

韓 國 銀 行	農 協 中 央 會	農 水 産 部
農業을 生業으로 하는 世帶 즉 田畓을 利用하여 農作物을 栽培하거나 兼하여 양잠, 양축을 業으로 하는 世帶를 말한다. 따라서 學校, 農業試驗場, 會社, 협동조합 등이 農業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對象農家에는 除外하였으며 果樹, 蔬菜, 特用作物, 火田, 양축, 양잠등 特殊耕種農家 및 畜産農家도 제외하였는데 이는 一般 穀作農家에 比하여 그 比重이 적을 뿐더러(1958年 當時 1.8%) 標本農家 配定이 곤란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밖에 穀作收入보다 그밖의 收入이 큰 農家, 調査資料의 記入能力이 없는 農家, 本調査에 應하기를 거부하는 農家,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本調査의 계속이 不可能視되는 농가	農業을 家業으로 獨立生計를 營爲하는 世帶를 對象農家로 하였다. 단 經營耕地面積이 0.5 ha未滿의 農家 및 農地改革法에 規定된 政府公共團體, 教育機關, 宗教團體, 學術研究機關등의 準農家는 除外하였다. 그리고 兼業所得이 生計費의 50%를 上回한다고 보는 農家, 調査簿의 기장을 거부하는 農家, 世帶員의 出他가 빈번하든지 독신인 農家, 其他 調査上 不適當하다고 인정되는 農家는 除外하였다.	農業센서스에서 定義된 個人農家

된 農家의 槪念變化를 보여주고 있고 <表3－2>는 1962년 이전에 韓國銀行, 農協中央會에서 실시하였던 農家經濟調査의 對象農家를 定義한 表이다.

同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農家의 槪念도 時代에 따라 變化함을 알 수 있다. 즉 1970년대의 都市化, 工業化의 促進과 産業社會의 發展과 함께 우리나라 農業에도 커다란 變化가 있어 왔으며 傳統的으로 家計消費를 目的으로 하던 自給的 農業이 商業的 農業으로 전환하고, 農業의 科學化가 진행되고 있으며 賃貸借農이 새롭게 확대되고 農業生産性도 꾸준히 향상되어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農業 및 農家의 定義도 바뀌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실제로 1960년도와 1970년대의 農家槪念의 定義는 많은 變化를 보임을 알 수 있는데 1960년도 農業國勢 調査時에는 個人農家와 準農家로만 農家가 분류되었으나 1970년 農業센서스나 1975년 簡易農業센

서스에서는 個人農家, 準農家뿐 아니라 專業農家, 兼業農家, 耕地面積, 家畜, 家族狀況은 基礎로 하여 農家收入中 가장 많은 收入이 되는 것을 調査한 營農形態別 農家等으로 農家의 槪念이 세분화되었다. 그리고 1980 年 農業센서스에서는 그동안 農家의 商業化, 兼業化로 農家性格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個人農家의 定義도 收入槪念을 도입하여 年間 總收入中 複合經營한 農業收入이 農家로서 定義된 各 項目別 <表3－1 參照> 收入보다 많은 家口는 個人農家로 定義하였다. 이는 日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日本에서는 耕地1段步 이하를 소유하거나 耕地가 전혀 없더라도 農業生産物의 總販賣額이 80 년 센서스結果에서 10 만엔 이상인 家口는 農家經濟調査의 標本農家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으며 農家의 槪念도 農業의 發展 및 時代에 따라 再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農家의 階層變動

農家經濟調査의 對象인 標本農家의 耕地規模別 分布變化를 살펴보면 <表3－3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61 년 이래로 매년 耕地規模가 큰 階層은 증가하는 반면에 耕地規模가 작은 零細農, 小農階層은 감소하는 現象을 보여 주고 있다.

즉 1961 년 標本設計 改編以後 1961 년에서 73 년까지의 標本農家는 2.0 ha 이상의 大農이 2.4 % 증가되었으나 0.5 ha 미만의 零細農은 7.2%나 감소하였고 0.5 ha～2.0 ha 사이의 小農, 中農은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1974 년에 개편되어 1974 년에서 1976 년까지 사용된 標本農家에서는 零細小農 階層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階層間에 큰 變動은 없었다. 그러나 77 년에 새로 개편되어 77 년에서 82 년까지 사용된 標本農家의 分布變化를 보면 77 년에서 82 년까지 5 년 동안 2.0 ha 이상의 大農이 0.6% 증가하였고 1.0 ha～2.0 ha의 中農階層은 5.8 %나 증가하였으나 1.0 ha 미만의 零細農, 小農階層은 6.3 %나 감소하였다. 그리고 1983 년에 새로이 改編되어 현재까지 쓰고 있는 標本設計에 의한 標本農家에서도 1.0 ha미만

表 3－3 耕地規模別 標本農家의 分布變化

單位 : 戶, (%)

區	分	零細農 0.5 ha미만	小 農 0.5ha～1.0ha	中 農 1.0ha～1.5ha	中 農 1.5ha～2.0ha	大 農 2.0 ha이상	計
1961	1961	354 (30.4)	414 (35.6)	226 (19.4)	97 (8.3)	73 (6.3)	1,164
年의	1965	290 (24.7)	438 (37.3)	252 (21.5)	102 (8.7)	91 (7.8)	1,173
標本	1966	310 (26.2)	443 (37.5)	236 (20.1)	98 (8.3)	93 (7.9)	1,180
設計	1967	272 (23.2)	465 (39.5)	238 (20.2)	109 (9.3)	92 (7.8)	1,176
改編	1968	274 (23.2)	441 (37.3)	255 (21.6)	111 (9.4)	100 (8.5)	1,181
	1969	277 (23.5)	439 (37.2)	249 (21.1)	116 (9.8)	99 (8.4)	1,180
	1970	272 (23.0)	444 (37.6)	245 (20.8)	118 (10.0)	101 (8.6)	1,180
	1971	267 (22.6)	445 (37.7)	241 (20.4)	128 (10.9)	99 (8.4)	1,180
	1972	273 (23.1)	454 (38.4)	231 (19.5)	124 (10.5)	100 (8.5)	1,182
	1973	271 (23.2)	447 (38.2)	232 (19.8)	118 (10.1)	102 (8.7)	1,170
74年	1974	635 (25.2)	945 (37.6)	524 (20.8)	227 (9.0)	184 (7.3)	2,515
改編	1975	634 (25.2)	944 (37.5)	517 (20.5)	240 (9.6)	182 (7.2)	2,517
	1976	626 (24.9)	931 (37.0)	514 (20.4)	265 (10.5)	180 (7.2)	2,516
77年	1977	767 (22.7)	1,260 (37.3)	736 (21.8)	355 (10.5)	256 (7.6)	3,374
改編	1978	738 (21.9)	1,212 (35.9)	786 (23.3)	376 (11.1)	263 (7.8)	3,375
	1979	738 (21.9)	1,228 (36.4)	809 (24.0)	376 (11.1)	224 (6.6)	3,375
	1980	715 (21.2)	1,177 (34.9)	851 (25.2)	399 (11.8)	233 (6.9)	3,375
	1981	701 (20.8)	1,169 (34.6)	825 (24.4)	425 (12.6)	255 (7.6)	3,375
	1982	685 (20.3)	1,126 (33.4)	856 (25.4)	429 (12.7)	277 (8.2)	3,373
83年	1983	373 (18.7)	643 (32.2)	515 (25.8)	285 (14.2)	182 (9.1)	1,998
改編	1984	369 (18.5)	631 (31.6)	533 (36.7)	261 (13.0)	203 (10.2)	1,997

資料 : 「農水産部 農家經濟 結果報告」, 1962 ～ 85.
( )는 %를 나타냄.

農家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標本農家의 耕地規模別 分布가 中農層, 大農層이 증가함에 따라서 標本設計에 의한 標本農家抽出이 中大農階層에 치우쳐서 選定되어 農家所得이 最大評價되고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실제로 1984 년도 農家經濟調査 標本農家와 全國農家의 分布比率을 비교해 보면 <表 3－4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0.5 ha 未滿農家와 0.5 ha～ 1.0 ha 農家는 10.4 %, 5.2 %씩 적게 標本農家가 選定된 반면 1.0 ha～ 1.5 ha, 1.5 ha～2.0 ha, 2.0 ha 이상 農家는 각각 6.4 %, 4.6 %, 4.6 %씩이나 많이 標本이 抽出되었기 때문에 現行 標本設計에 의

表 3－4 耕地規模別 農家經濟調査 標本農家와 全國農家의 分布比率比較, 1984

단위 : (%)

耕 地 規 模	標 本 農 家 (A)	全 國 農 家 (B)	差 異 (A－B)
0.5 ha 未 滿	18.5	28.9	－10.4
0.5 ha～ 1.0 ha	31.6	36.8	－5.2
1.0 ha～ 1.5 ha	26.7	20.3	6.4
1.5 ha～ 2.0 ha	13.0	8.4	4.6
2.0 ha 以 上	10.2	5.6	4.6
計	100.0	100.0	

表 3－5 韓國과 日本의 耕地規模別 農家構成 比率 比較

단위 : (%)

區 分		韓 國					日 本				
		1966	1971	1976	1981	1984	1966	1971	1976	1981	1984
零細民	0.5 ha미만	35.2	33.8	30.9	30.3	28.9	37.2	38.3	40.6	39.6	40.5
小農	0.5ha～1.0ha	35.2	32.8	36.5	37.2	36.8	32.1	31.0	30.1	30.7	29.6
中農	1.0ha～1.5ha	17.2	18.6	18.6	19.4	20.3	17.6	16.6	15.1	15.5	14.8
	1.5ha～2.0ha	8.7	8.3	7.8	7.8	8.4	7.8	7.7	7.1	7.5	7.5
大農	2.0 ha이상	6.7	6.5	6.2	5.3	5.6	5.3	6.4	7.1	6.7	7.6
合 計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註 : 非耕種農家는 除外
資料 : 農水産部 「農林統計年報」, 日本 : 農林省 「農林水産統計」.

한 農家所得推定은 실제보다 過大 評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에서는 農家經濟調査 對象이 되는 標本農家에 대한 分布變化를 살펴보았지만 全體農家에 대한 耕地規模別 農家構成比를 보면 <表 3－5> 와 같다. 同表에서 耕地規模別 農家構成比推移를 보면 0.5 ha 미만의 零細農의 比率은 1966 년 이래로 每年 감소하고 있고 2.0 ha 이상 大農階層도 1981 년까지 감소하다가 84 년에 약간 증가하여 5.6 %의 構成比를 나타내고 있으며 小農 및 中農은 增加 또는 保合勢를 보이고 있다. 日本의 경우를 살펴보면 日本은 우리나라와 반대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小農과 中農層은 감소하고 零細農과 2.0 ha 이상의 大農階層은 증가하는 兩極化 現象을 보임을 알 수 있다.

4. 農家의 生産構造 變化

1984 년의 農業所得은 農家所得의 66.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해마다 農業依存度가 낮아지고 있다. <表 3－6 >에서 볼 수 있듯이 1962 ～ 75 년사이에는 규칙적이지는 아니지만 약간 증가한 반면 1975 ～84 년 사이에는 큰 폭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農外所得率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1984 년의 경우 農外所得率은 33.3%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農業所得率의 변화와 일치하는 것이며, 1975 년 農業所得率은 80.2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984 년에는 70.1%로 감소하게 되었다. 이는 農業粗收入의 增加率에 비하여 農業經營費의 增加率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農業投入財의 相對價格이 크게 증대한 것에 기인한다.

여기서 農業粗收入이 증대한 내용을 보면 畜産物을 중심으로 해서 農作物外 收入이 크게 증대하였고 農作物收入은 감소추세에 있음을 볼 수 있다

農作物收入은 農業所得源을 다변화하려는 시책으로 인하여 作物別 耕地利用面積의 構成比가 변화하고 있는 관계로 農業生産構造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表 3－7 >에서 보듯이 食糧作物의 栽培面積을 보면 1965 년 90.5 %였다가 1984 년에는 70.8 %로 크게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

表 3－6 農家經濟 主要指標의 變動

單位 : 千원

	1962	1965	1970	1975	1980	1984	1984 / 62 (倍)
農業粗收入	73.4	116.0	248.1	891.0	2,342.2	5,276.7	71.9
農業經營費	19.4	27.2	54.0	176.1	587.4	1,577.4	81.3
農業所得	54.0	88.8	194.1	714.8	1,754.8	3,699.3	68.5
農外所得	13.9	23.4	61.8	158.1	938.3	1,849.8	133.1
農家所得	67.9	112.2	255.9	872.9	2,693.1	5,549.1	81.7
農家經濟剩餘	10.2	4.8	37.8	226.9	405.1	1,163.1	114.0
農業依存度(%)	79.6	79.1	75.8	81.9	65.2	66.7	－
農業所得率(%)	73.6	76.6	78.2	80.2	74.9	70.1	－

資料 :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 該當年度

表 3－7 作物別 耕地利用面積 構成比 變動 推移

單位 : %

	1965	1970	1975	1980	1984
食糧作物	90.5	84.7	80.2	71.7	70.8
米穀	34.5	34.6	38.7	44.6	45.6
麥類	33.7	30.9	24.2	13.0	12.8
豆類	10.3	10.5	10.3	8.8	8.6
薯類	6.0	5.2	4.6	3.3	2.3
雜穀	6.0	3.5	2.3	1.9	1.7
特作	1.7	2.6	3.8	4.2	4.9
菜蔬	4.2	7.3	7.8	13.0	11.7
果實	1.2	1.7	2.4	3.6	4.0
桑田	1.4	2.4	1.4	1.0	1.0
其他	1.0	1.2	4.5	6.5	8.1
利用面積 (千ha)	3,560	3,478	3,144	2,765	2,707

資料 : 農水産部, 「作物統計」, 1985.

다. 이는 米穀의 栽培面積比率이 34.5%에서 45.6%증가한데 비하여 米穀을 제외한 食糧作物의 栽培面積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農業生産與件의 變化는 作物의 耕地利用뿐만 아니라 農業勞動力의 이용에도 큰 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農家經濟調査結果에 의하면 1962년 農家戶當 家口員數가 6.32인이었고, 이중 營農從事者는 3.99인으로 그 相對比率이 53.6%이었으나 1984년에는 家口員數가 4.99인, 그리고 營農從事者가 2.48인으로 그 비율이 49.7%로 낮아졌다. 이같은 추세로 農業勞動力의 不足은 상대적으로 農業機械化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農家經濟調査의 生産費調査, 資産評價에 많은 變化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듯 부족해지는 農業投入財에 대처하여 상대적으로 其他生産投入財의 대체가 증대되고 있으며, 肥料와 農藥 그리고 農機械가 대표적인 例이다.

<表 3－8 >에 나타나듯이 肥料와 農藥은 1970년까지만 해도 매우 부족한 형편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그들의 消費量은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消費量증대는 年末의 재고 생산자재로도 크게 남아 農家經濟調査의 세밀하고 과학적인 評價가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表 3－8 肥料·農藥의 需給推移

單位：千㎏, kg, %

	肥料[1]				農藥[2]			
	生産量	消費量	耕地ha當施肥量	自給率	生産量	消費量	耕地ha當施藥量	自給率
1965	75	393	174.2	19.0	10	13	5.6	76.9
1970	583	563	245.0	103.6	26	25	10.9	104.0
1975	860	886	395.7	97.1	22	21	9.4	104.7
1980	1,345	828	377.0	162.4	42	33	15.1	127.3
1984	1,394	762	354.0	182.9	48	37	17.6	129.7

資料：農水産部, 「農政主要指標」, 1985.
註：1) 肥料의 生産量, 消費量은 成分千㎏, ha當 施肥量은 kg임.
2) 農藥의 生産量, 消費量은 基準千㎏, ha當 施藥量은 kg임.
* 自給率은 消費量에 대한 生産量의 相對比率임.

表 3－9 農機械 保有臺數의 變動 推移

單位：臺

	1965	1970	1975	1980	1984	普及率[3](%)
耕耘機	1,111	11,884	85,772	289,779	538,273	27.3
트랙터	–	61	564	2,664	9,684	0.5
移秧機	–	–	16	11,061	30,893	1.6
바인더	–	–	–	13,652	22,635	1.1
콤바인	–	–	56	1,211	8,417	0.4
防除機[1]	7,579	45,008	137,698	331,912	473,501	24.0
脫穀機	18,909	41,038	127,105	219,896	283,647	14.5
其他[2]	26,332	54,708	67,640	199,038	280,476	14.2
總保有	53,931	152,699	418,801	1,069,213	1,650,526	83.6

資料：農水産部, 「農政主要指標」, 1985
註：1) 噴霧機, 撒噴霧機, 高性能防除機
2) 揚水機, 乾燥機, 播種機
3) 1984年度 基準, 普及率 = $\frac{\text{保有臺數}}{\text{農家戶數}} \times 100$

또한 肥料 農藥의 消費量과 在庫量의 증대 못지 않게 農家의 農機械 保有臺數도 크게 증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農家經濟調査에서 生産費推定 및 農家財産評價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구체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은 다음 章에서 論하기로 한다.

第 4 章

農家經濟 調査內容의 分析과 改善方案

이 章에서는 經營과 家計 면에서의 農家經濟構造를 살펴보고 農家經濟調査에서 記錄하고 있는 調査帳簿의 種類와 記帳內容을 파악하였으며 실제로 農家經濟調査員들이 調査業務上에서 당면하고 있는 問題點들을 제시하여 農家經濟調査 業務改善에 參考資料를 제공코자 하였다. 그리고 農家經濟調査原簿에서 조사하고 있는 農家財產의 分類現況을 外國과 比較檢討하고 土地, 大農機具, 大動植物等의 固定資產과 在庫生產資材, 小動物등의 農家流動資產의 評價上의 問題點과 農家資產의 減價償却問題 그리고 農家所得의 評價方法을 檢討 分析하였으며 簿記的 측면에서의 農家經濟調査 決算過程을 파악하여 農家의 資金調達과 運用狀況을 檢討하였다. 또한 農家經濟調査資料를 效率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標本誤差, 非標本誤差 및 統計利用上 발생되는 問題點들을 分析하여 統計의 效率性을 높이고 農家經濟調査 業務遂行의 能率化를 기하고자 하였다.

1. 農家經濟의 構造分析

가. 農家經濟와 經營·家計의 關係

資本主義社會에서 經濟活動 主體로서의 個別經濟는 그 機能에 따라「經營」과「家計」로 나눌 수 있는데 經營은 消費面을 가지지 않고 생산된 財貨를 家計에 販賣하여 收入을 얻는 기능이고 家計는 經營을 하지 않고 봉급, 配當, 利子 등에 의해 생활하는 消費經濟의 主體이다.

그런데 農家經濟는 經營과 家計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經營單位인 동시에 家計單位이다. 즉 農家經濟는 經營部門과 家計部門으로 구성되고 經營部門은 農業經營과 農外經營으로 분류되며 家計部門은 配當, 利子, 地代 등의 財產利用所得 獲得部門과 他企業에 勞動力을 제공하는 것에 의한 勞動所得을 획득하는 部門, 그리고 家計支出을 위한 消費經濟部門의 3部門으로 분류된다. 이것을 所得과 消費의 면에서 살펴보면 農家經濟는 農業所得部門과 農外所得部門 그리고 消費部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關係를 나타낸 그림은 <圖4-1>과 같다.

圖 4-1 農家經濟와 經營, 家計의 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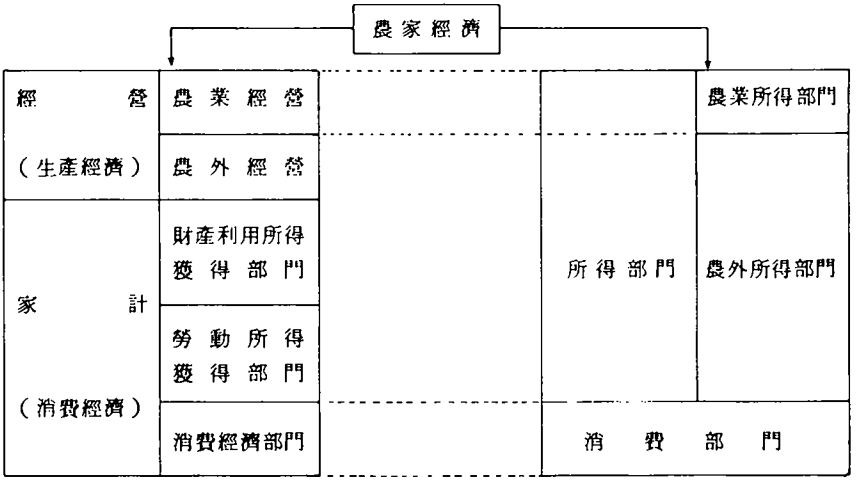

資料：日, 農林水產省, 「農家經濟調査解說」.

나. 農家와 外部經濟와의 關係

農家의 經濟活動實態를 所得과 消費 면으로 分類하여 農家와 外部經濟의 關係 및 農家經濟內部에서의 經營과 家計關係를 살펴보면 <圖4－2>와 같다. 同圖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農家에서는 外部經濟의 生産財市場에서 肥料와 農機具等을 구입하고 勞動市場에서 勞動力을 고용해서 農業生産 및 農業 이외의 事業을 하는데 이중 農業經營을 위해 소비하는 支出이 農業支出이고 農外事業에 대한 支出이 農外事業支出이다. 그리고 農業 및 農外事業의 生産物은 外部 生産物市場에 販賣되는데 쌀, 보리, 야채, 果實, 畜産物 등이 販賣되어 農業收入이 발생되고 林産物, 水産物 등의 販賣 및 商工鑛業 등에서 발생되는 收入이 農外事業收入이다. 또한 農家는 農業 혹은 農外事業의 生産物을 販賣할 뿐 아니라 餘裕資金과 土地의 貸與에 대한 利子 등 財産利用에 의한 收入 및 農家勞動力을 外部經濟에 제

圖 4－2 農家經濟의 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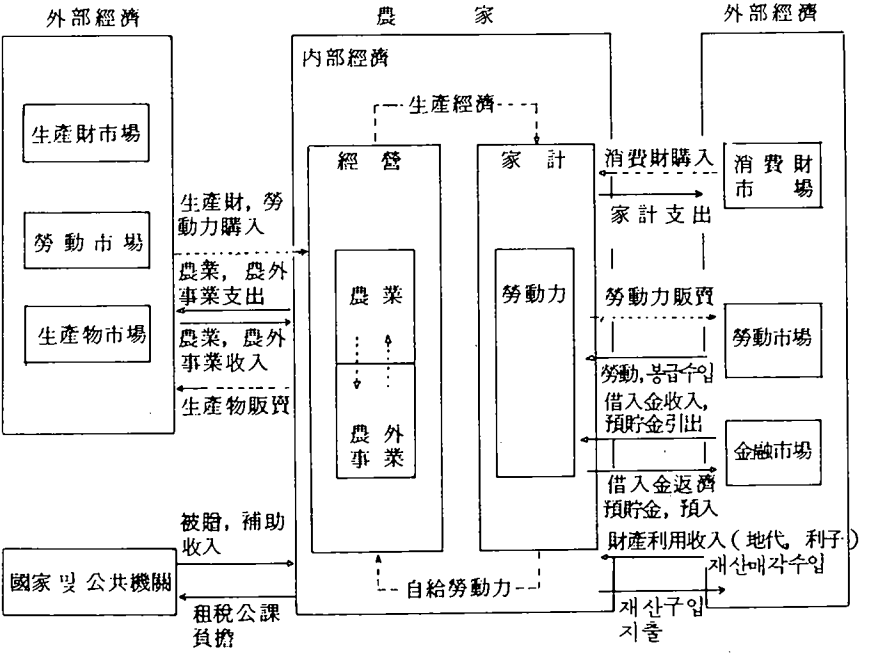

資料 : 日, 農林水産省, 「農家經濟調査 解說」.

공함으로써 勞賃 및 俸給收入을 얻으며, 日常生活에 소요되는 消費財를 구입하여 家計費支出을 하는 한편 國家와 公共團體에 租稅公課金을 부담하고 증여 및 부조, 補助金을 수입한다. 그리고 農協 등 金融機關과의 去來도 農家經濟의 중요한 部門을 이루고 있다.

다. 農家의 內部經濟

農家經濟內部去來로서는 對外的인 現金去來를 수반하지 않는 生產現物의 自家消費와 營農에 필요한 自家勞動力 提供이 있다. 즉 農業經營의 結果에서 얻어지는 쌀, 보리, 菜蔬, 果實, 계란 등의 農產物 및 農業 이외의 生產物中 市場에 판매되지 않고 農家의 自家消費用으로 충당되는 現物을 총칭해서 生產現物家計消費라고 하는데 經營의 면에서 보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農業, 農外收入이지만 逆으로 家計의 면에서 보면 家計支出인데 農家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 生產現物의 自家消費分은 農家의 家族勞動力을 再生產하는데 이용되는데 이 勞動力의 일부는 直接 外部의 勞動市場에 판매되는 동시에 대부분은 家族勞動力의 自給分으로서 가계로부터 經營에 勞動力이 제공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農業의 특색으로서 고용노동력에 비하여 이러한 自給勞動力이 압도적으로 많다.

라. 農家收支와 農家經濟剩餘

農家의 收入에는 「農業收入」, 「兼業收入」, 「農業外收入」, 그리고 사례금, 송금보조 및 피증보조 등의 「移轉收入」과 固定資產의 賣却이나 豫貯金의 引出 등에 의한 收入이 있다. 그런데 이 農家의 收入中에서 農產物의 販賣나 勞賃收入과 같이 명백히 그 해의 所得이 되는 所得的 收入이 있는 반면에 貯金의 引出이나 借入金 및 固定資產賣却等에 의한 收入은 그 해의 所得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財產的 收入」이라 부른다.

한편 農家의 支出에는 「農業支出」, 「兼業支出」, 「農業外支出」 豫金返濟, 固定資產購入支出이 있으나 그 가운데 農業支出이나 農外事業支出과 같이 전부가 그 해의 비용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所得的支出이고 豫

金返濟나 固定資產購入에 소요되는 支出을 「財產的支出」이라고 定義한다. 그리고 農家의 所得이 된 收入 즉 所得的收入으로는 農業收入, 兼業收入, 事業外收入, 移轉收入이 포함되고 이들 收入에서 그 收入을 올리는데 所要된 經費 즉 農業支出, 兼業支出, 事業外支出을 差減한 殘額이 農家所得이며 다시 이 農家所得에서 租稅公課金을 差減한 殘額이 農家가 任意로 處分할 수 있는 加處分所得이 된다. 이 加處分所得에서 家計費 및 農家에서 分家時에 소요되는 分家支出費用을 差減한 殘額이 農家經濟 剩餘 혹은 赤字이다.

2. 農家經濟調査 帳簿의 種類와 記帳內容

가. 日計簿의 構成

日計簿는 農家經濟의 再生產過程에서 農家財產의 增減變化를 매일의 記錄을 통해 動態的으로 파악코자 하는 帳簿로서 매일매일의 去來狀況과 收支發生狀況을 빠짐없이 記入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家口員表

本表는 每月 1일 항상 동거하고 있는 家口員의 概況을 자세히 기입하는 表로서 記帳內容은 經營主와의 關係, 性別, 연령, 勞動能力, 就業狀況, 主業 및 副業, 最終學歷 등이다. 여기서 家口員이라 함은 調査日 현재 3개월 이상 항시 동거하는 자로서 家族이라도 3개월 이상 출타하였을 경우에는 家口員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日本의 경우는 期間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을 基準으로 하고 있다.

2 家畜概況表

家畜概況表는 每月 1일 현재 調査對象 農家에서 기르고 있는 젖소, 고기소, 한우, 돼지, 닭 등의 마리 수를 연령별, 암수별로 調査 記入하는 表

로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家畜은 本 調査에서 제외된다.

[3] 耕地面積調査表

每月 1일 현재의 耕地面積을 登錄簿에 구애됨이 없이 실제의 면적을 記入하는데 耕地面積은 自己所有의 땅이나 빌린 땅을 불문하고 每月初 現在 標本農家가 경작하고 있는 面積(借用地는 포함하고 賃貸地는 除外)을 말하며 논, 밭, 과수원, 뽕밭, 묘포, 其他를 自作地, 借用地로 分類하며 記帳한다.

[4] 耕地概況表

이 表는 해당 農家의 全耕地狀況을 필지별, 地目別, 自作地, 借用地別, 實際面積과 규반면적, 가경면적을 調査 記入하는 表로서 生產費(土地用役費, 식부지 負擔比率等)調査에 이용되며 作物栽培狀況表 調査에도 활용된다.

[5] 作物栽培狀況表

作物栽培狀況表는 該當月의 營農狀況을 調査하는 表로서 作業時間 및 作業時 소비한 現物表와 서로 관련되며 該當農家의 月中 作物栽培現況을 調査 記入하는 것이다. 이 表에 記入되는 調査內容으로는 每月 1일을 기준으로 該當農家에 식부되어 있는 作物名 및 식부면적과 해당 月中에 파종되어 이 달에 심은 作物 및 식부면적이 포함된다.

[6] 收入 및 支出表

매일매일의 去來가 발생할 때마다 記入하는 表로서 收入表에는 實物이 나가고 現金이 들어왔을 때 現金과는 관계없이 實物이 들어왔을 때와 移轉收入이 들어왔을 때 記入하고 實物이 外上去來일 경우에는 外上販賣 및 購入란에 外上販賣로 整理 記入한다. 支出表에는 收入表와는 반대로 實物이 들어오고 現金이 나갔을 때와 現金 및 實物이 나갔을때 記入하고 現金이 支出될 豫定으로 實物이 들어왔을 때에는 外上販賣 및 購入란에 外上購

入으로 整理 記入한다.

7 作業時間 및 作業時 消費한 現物表

이 表는 자기집 農事일을 위하여 일한 사람의 일한 時間數를 地目別, 作物別, 作業別로 作業時間을 記入하며 그때 消費된 種子, 肥料, 農藥 등의 資材 및 數量을 동시에 記入할 수 있도록 한 表이다. 여기서 記帳되는 農事作業時間은 반드시 農事일만이 아니라 가옥수리 등 農外作業도 記入하며 自家消費用 作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8 自家生産 自家消費表

自家生産 自家消費量表에는 自己 家口에서 生産된 것을 自己 家口員이 소비한 生産物에 한하여 記入한다. 즉 쌀, 보리쌀 등의 穀類와 달걀, 닭 등의 畜産物, 무우, 배추, 참외 등 菜蔬類, 사과, 감 등 果實類, 깨, 마늘, 파 등 조미료, 볏짚, 지엽 등 연료 그리고 原始取得物 등을 自己 家計에서 사용한 것을 記入하는 데 自己집에서 생산하지 않고 日計簿의 收入·支出表에 記帳된 購入糧穀이나 被贈補助 받은 것을 本 表에 記帳해서는 안된다

9 搗精量表

이 表에서는 搗精量을 조사하여 月分 糧穀在庫量 및 消費量表와 收入·支出表를 整理하는 것으로서 한달에 한번 調査 記入한다.

10 負債表

負債는 農家에서 農協, 市衆銀行 등 外部로부터 借入한 각종의 債務 및 未拂金의 現金 및 現物을 말하는 것으로서 借入金, 外上買入金, 負債利子, 未拂金 등이 포함되며 미리 타고 아직 拂入안한 곗돈도 未拂金으로서 負債에 포함된다.

나. 調査原簿 集計表

農家經濟 調査原簿는 精態調査表로써 一定時點에 있어서 農家의 財産 變

動事項을 調査 記帳하는 帳簿이다.

農家經濟調査에서 農家의 財産이란 農家의 世帶를 구성하는 世帶員 全員이 所有하고 있는 資産 및 負債의 總額을 뜻하지만 本帳簿에는 狹義의 農業部門 財産만을 記帳하고 兼業用 財産이나 家計用인 家具 家財 및 의복 그리고 편의상 小農機具 및 小植物도 調査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調査原簿를 구성하고 있는 調査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土地資産 調査表

土地는 1차적으로 農家의 財産狀態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所得의 原泉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논, 밭, 과수원, 묘포, 뽕밭, 집터, 林野, 웅덩이 등 모든 土地를 自作地, 借用地, 賃貸地別로 調査 記入한다.

2 農業用 施設物表(建物, 온실, 畜舍, 構築物 등)

農家가 所有하고 있는 建物 및 構築物에 대해서 調査 記入하는 表로서 施設物名 및 付號, 構造.築造 또는 購入 年月日, 耐用年數, 農業用 및 家計用 使用比率, 건평수, 신조가, 現在價, 年中增加 혹은 減少, 購入支拂費, 自給材料費, 家族勞動評價額, 增加 혹은 減少에 의한 年度末 건평수와 現在價 등의 內容이 조사되어 記帳된다.

3 大農機具表

農業用으로 農家에서 사용되고 있는 機械機具로서 減價償却을 要하는 여러 大農具를 調査 記入하는 表이다. 이 表에 記入되는 事項은 大農具名, 規格 또는 容量, 購入 또는 製作年度, 연중 增加 혹은 減少, 年度初 現在價, 購入支拂費, 自給材料費, 家族勞動評價額 등의 內容이 調査 記帳한다.

4 大植物表

大植物은 農業用에 사용하기 위해 심은 果樹 및 뽕나무를 말하는데 果樹는 판매하여 現金收入을 目的으로 하는 果目을 記入하여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植物別로 調査하며 그 果目의 果實이 自家消費에 그친다면 計

算하지 않으나 現金收入이 있는 果樹라면 計算하는데 뽕나무도 나무의 形態別, 수령별로 調査하여 記帳한다.

5 大動物表

大動物表는 動物中에서 소(젖소 포함), 고기소, 말(나귀, 노새), 양(산양, 면양, 염소), 돼지, 꿀벌 등을 調査 記入하는 表로서 이중 고기소, 돼지, 꿀벌 등은 耐用年數가 없다.

이 表에서 調査하고 있는 事項은 大動物名, 購入 및 出產年度, 用度, 性別 및 年齡, 年初 및 年末 評價額, 年中 增減에 관한 內容이다.

6 小動物表

이 表에서는 닭, 오리, 토끼, 개 등 畜產을 위한 小動物을 種類別, 性別로 年度初 마리수 및 評價額, 年中 增減마리수, 年度末 마리수와 評價額, 年度初 農業資本額에 관한 內容을 調査하여 記帳한다.

7 在庫農產物表

農家에서 보유하고 있는 在庫農產物中에서 自家經營에서 自家生產된 農產物을 調査 記入하며 購入한 糧穀, 農地賃貸, 其他賃貸, 農業勞賃, 農業서비스 등으로 收入된 品目은 日計簿 該當項目에 이미 調査되었으므로 本在庫調査에서는 반드시 제외하여야 하며 다음 年度에는 前年度 年末在庫量이 年度初에 記錄된다.

8 在庫生產資材表

年度末 現在 農家에 남아 있는 生產資材中 自家生產物을 제외하고 구입한 肥料, 農藥, 種子, 飼料, 고공품 등을 調査하여 在庫生產資材表에 記入한다.

9 現金 및 準現金表

農家에서 현재 家口員 全員이 소지하고 있는 現金, 預金 및 貯金, 賃貸金

계, 保險金, 有價證券 및 未收入金 등에 대한 年初, 年末保有額을 조사하여 記入한다.

⑩ 文化用品 保有現況表

文化用品 調査는 農村의 文化水準을 조사하는 것으로 T. V (칼라, 흑백) 전축, 녹음기, 선풍기, 냉장고, 전화, 재봉틀, 세탁기, 카메라, 피아노 (풍금), 에어컨, 자전거, 오토바이, 승용차, 화물차, 비디오, 전기밥솥, 전자자 (전기밥통), 가스렌지, 전기믹서, 상수도, 전기, 농민신문, 일반신문 등으로 調査하여 記入한다.

⑪ 負 債 表

負債는 農家의 外部로부터 借入한 각종의 債務 및 未拂金 등의 現金 및 現物을 말하는 것으로서 借入金, 外上買入金, 負債利子 및 未拂金 등이 있으며 미리 타고 아직 불입안한 곗돈도 負債로 調査 記帳한다.

⑫ 租稅, 公課金 및 수리조합비 납부실적表

이 表는 農家에서 지불하고 있는 稅金現況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租稅는 財産稅, 住民稅, 방위세, 農地稅, 상속세, 自動車稅, 소방, 오물 등의 公共施設稅, 其他租稅로 구분되며 公課金에는 道路修理費와 기타 公課金으로 구분, 조사된다. 또한 수리조합비는 농지개량조합비와 기타 조합비로 조사되어 記入된다.

3. 農家經濟調査帳簿의 項目分類上 問題點과 改善方案

이 節에서는 실제로 農家經濟統計業務를 담당하고 있는 各 道統計事務所의 實務者들과의 對談과 直接 現地에서 直接 調査業務를 담당하고 있는 現地 調査員들을 대상으로 說問調査를 실시하여 農家經濟調査上 調査員들이 당면하고 있는 問題點들을 해결하기 위한 改善方案을 제시코자 하였다.

그러나 農家經濟調査는 調査內容이 복잡하고 방대하며 各道에서 당면하고 있는 問題點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方案은 없으며 여기서는 農家經濟調査의 主要帳簿인 日計簿와 原簿記錄上에서 各道別로 共通的으로 나타나는 問題點들에 국한하였다.

가. 日計簿調査上의 問題點

農家經濟調査를 위하여 全國 200개 調査地區에 地區當 1명씩의 統計調査員이 常住하여 조사원들은 標本農家에 대한 日計簿의 배부, 記帳指導 및 回收, 日計簿의 檢討 및 入力, 調査原簿의 整理 報告 및 其他 資料蒐集業務에 종사하고 있는데 日計簿는 農家經濟調査의 根幹이 되며 農家經濟의 動態的인 狀況이 記錄되어 있는 帳簿이다. 그런데 直接 調査區域에 駐在하여 農家經濟調査를 담당하고 있는 調査員들은 대부분이 高等學校 卒業水準이고 調査經歷이 1년 미만인 調査員들도 상당수 되므로 統計用語에 익숙치 못하며 구체적인 調査事項이 理論的으로 어떻게 설명되며 왜 조사되는지 모르는 調査員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調査員들에 대한 農家經濟統計 作成上의 敎育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調査員들을 대상으로 設問調査와 直接 面接을 통하여 파악된 日計簿調査上의 問題點과 調査員들의 건의사항들을 요약하여 農家經濟調査 業務改善에 參考資料를 제공코자 하며 그 要約內容은 다음과 같다.

(1) 現金을 貸與하였거나 物品을 외상으로 販賣한후 販賣金額을 貸與한 것으로 處理한 경우에 貸與받은 債務者가 도주, 사망하여 貸與金, 回收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現在는 其他·雜支出(부호 : 952)로 처리하는데 재산적 손실로 보아 이를 財產的 支出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2) 외상으로 物品을 구입하여 負債가 생겼을 때 購入時單價와 返濟時 單價間의 차이로 발생한 差額을 잉여분은 事業外 收入中 其他雜支出로, 損失은 家計費의 其他支出(符號 952)로 分類 處理하는데 이러한 差額은 단지 時價變動에 의한 金額이며 실제로는 農家에 收入이나 支出이 없었으므로 이는 불합리하다. 즉 農家에서는 現物去來가 빈번히 발생하나 이를 모두 時價로 평가하여 差額을 農家收入과 家計費로 처리함으로써 農家收入

과 家計費가 過大評價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現物負債를 평가하는 경우 返濟時 時價로 평가하지 않고 빌렸을 때 價格을 適用 評價하여 時價變動에 의한 收入이나 家計費支出이 과다하게 계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 大動物의 폐사를 기타 지출로 분류하여 家計費 項目에 記帳하나 이를 財產的 損失로 보아 財產的 支出로 조사하는 것이 妥當하다.

(4) 잣나무, 밤나무 등의 有實樹에 의한 收入은 兼業收入中 林產物收入으로 區分되나 그 열매는 其他 果實로 分類되어 이를 販賣하여 얻는 收入은 農業收入中 果樹收入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잣이나 밤의 판매수입은 兼業收入으로 分類 記錄하여 項目分類의 一貫性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어떤 調査地區에서는 都市近郊地帶로서 집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建物評價額의 10% 이상 修理費로 소요되는 費用만을 大修理로 인정하여 耐用年數가 수정된다. 따라서 비록 費用이 과다하게 支出되었어도 評價額의 10%가 넘지 않는 費用은 經常修理費로 分類되어 經營費로 인정되기 때문에 農家支出이 과다하게 算出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修理費가 評價額의 10% 미만이라도 建物의 耐用年數가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되면 調査員의 判斷에 맡겨 財產的 支出로 處理토록 하는 것이 보다 現實的이다.

(6) 財產增殖을 目的으로 하거나 貯蓄手段으로 값비싼 귀금속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家計雜費中 장신구비 (부호 : 951) 로 處理하는데 이는 現實性이 없으므로 財產的支出中 有價證券 買入 (부호 : 707) 으로 處理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파와 같은 조미채소는 고추, 마늘, 양파와 같은 부류로 記帳되어야 하나 조미료부호 중에는 타당한 符號가 없어서 현재는 其他 菜蔬類로 분류되므로 記錄될 符號新設이 要望된다.

(8) 들깨를 참깨부호 (부호 854) 로 병행 記入함으로써 主要食品在庫量 및 消費量調査時 들깨와 참깨를 分類調査해야 한다는 애로점이 있고 참깨 들깨가 糧穀消費量表에서는 單位가 *kg*으로 되어 있으나 收入支出表에는 ℓ로 되어 있어 在庫量 把握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들깨 符號의 新設과 記錄上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單位를 統一할 필요가 있다.

(9) 農作物收入符號中 질경 (도라지) 을 其他 藥用作物로 調査하나 실제

로 질경은 약용보다 食用으로 소비되는 것이 대다수이므로 特用作物(부호 052)로 分類되는 대신에 기타 근채류(부호 044)로 分類 處理되어야 한다

(10) 農家가 政府에서 糧穀을 借入했을 때 日計簿 收入表에는 其他借入(부호 416)으로 記錄되고 原簿 負債表의 借入處欄에는 其他 金融機關(부호 06)으로 分類 記入되는데 負債表 借入處欄에 水協, 원협 및 其他 政府機關에서 農家가 借入한 負債를 記錄할 項目을 신설하여 日計簿와 原簿記錄上 一貫性을 유지토록 할 필요가 있다.

(11) 他農家에 貸與해 주었거나 他農家에서 임차한 大動物이 판매되어 販賣金額中 一部를 大動物飼育 수고비로 他農家에 支出하거나 他農家로부터 수고비로 받았을 때 현재는 農業勞賃支出(부호 520)과 農業勞賃收入(부호 201)로 각각 分類 記帳하고 있는데 이러한 收入과 支出에 對한 記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收入支出符號가 따로 신설되어야 한다.

나. 原簿調査上의 問題點

農家經濟調査 帳簿中 原簿는 年初와 年末에 調査員이 農家財産의 利用實態 및 變動狀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直接 調査 記帳하는 帳簿로써 農家의 精態的인 財産狀況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調査員들이 直接 原簿를 調査 記錄하는데 당면하는 問題點들을 제시하여 農家經濟調査 業務改善에 參考資料를 제공코자 하며 그 內容들은 다음과 같다.

(1) 大動物을 폐사處理하는 경우에 原簿에는 年初評價額을 감소 마리 수에 記入하고 日計簿에는 家計費中 其他 支出(符號 : 952)로 損失 處理를 하고 있는데 大動物이 폐사하여 財産的 損失이 발생하였으나 損害額을 家計費에 計上함으로써 家計費는 늘어나고 農家所得에는 損害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年末價格이 年初 價格보다 낮거나 폐사되었더라도 고기 일부를 販賣하여 販賣收入이 있을 때는 年末價格과 年初價格의 差額만큼 農家所得에 減少로 가져온다는 모순점이 있다. 따라서 減少符號가 재해 및 폐사에 의한 減少(부호 54)인 경우에는 日計簿上 家計費로 記帳하는 대신 財産的 支出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2) 大農機具를 年中에 購入하였을 때는 當年에는 減價償却을 하지 않고 年末에 구입한 評價額을 그대로 原簿에 記入하도록 調査要領에 되어 있으며 <表 4 - 1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農家經濟調査 調査員들의 大部分은 調査要領에 따라 年中 구입한 大農機具에 대해서 減價償却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翌年初 現在價는 이미 經過年數가 1 년이 된 것으로 가상하여 1 년분의 減價償却이 差減된 評價額이 記入되나 購入年度의 農業經

表 4-1 年中 購入한 大農機具에 대한 減價償却 與否調査

단위 : 조사원수, ( ) 안은%

區分 \ 道	京畿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濟州	計
한 다	1	0	3	0	7	2	0	1	0	14(7.1)
안 한 다	24	17	14	26	16	27	28	25	4	181(92.3)
해당없음	-	-	-	-	-	1	-	-	-	1(0.6)
計	25	17	17	26	26	30	28	26	4	196(100)

營費에는 減價償却이 計上되지 않으므로 年中 增加欄에는 購入價格을 그대로 記入하고 年中 減價償却額만큼을 減少시켜 年末評價額에 記帳하여 減價償却을 農業經營費에 計上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原簿集計表의 大農機具 增減事由中 耐用年數가 경과하여 폐기되었으나 賣却處分을 하지 않고 保有하고 있는 경우 處理가 애매하고 農家에서 共用으로 購入하여 共用으로 使用하고 있는 大農具의 자분란 및 使用比率欄이 없어서 共用 農機具의 資產누락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大農機具表에 지분란 및 使用比率欄 新設이 要請된다.

(4) 土地를 제외한 施設物, 大農具, 大動植物은 自家, 借用, 賃貸 등으로 區分 調査되지 않아서 收支 파악이 곤란한데 특히 賃借 혹은 賃貸한 大動物에 대한 調査基準 및 調査欄이 없기 때문에 貸與되어 있는 大動物 평가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表 4 - 2 >의 調査員 設問調査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調査員들은 임차하거나 賃貸한 大動物 평가에 있어서 30.1 %만이 農家資產으로 평가하며 評價基準도 서로 달라서 임대한 것만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고 賃借한 大動物만 평가하는 調査員도 있는 반

면 賃借, 賃貸 모두를 평가하는 등 評價方法도 서로 상이하였던바 耕地概況表에서와 같이 貸與되어 있는 大動物도 調査 記帳토록 調査欄을 설정하거나 賃借한 大動物도 조사하는 일관된 基準을 세워서 調査員들이 賃借 혹은 賃貸한 大動物評價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토록 요망된다.

表 4-2 賃借 혹은 賃貸한 大動物 評價與否 調査

단위 : 조사원수, ( )안은 %

區分 \ 道	京畿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濟州	計
한 다	7	12	11	0	2	16	7	4	0	59(30.1)
안 한 다	14	5	6	24	16	12	19	15	4	115(58.7)
해당없음	4	0	0	2	5	2	2	7	0	22(11.2)
計	25	17	17	26	23	30	28	26	4	196(100)

(5) 事業外收入을 얻는데 사용된 施設物에 대한 支出은 減價償却을 하지 않으므로 使用比率欄에 農業用, 家計用比率外에 兼業用比率欄을 추가 신설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農業用施設物中 農業用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는 모두 家計用으로 使用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計算하기 때문에 家計費가 과대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大農機具의 경우에 있어서도 農業用 이외로 兼業用, 家計用에 쓰일 경우가 있으므로 使用比率欄設置가 요망한다. 실제로, 慶南에는 양식장을 경영하는 農家가 8家口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資産에 대한 減價償却은 하지 않기 때문에 收入이 실제보다 높게 算定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6) 農家에서 收益을 目的으로 정원수를 길러서 兼業收入을 얻는 경우 정원수는 農家資産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이를 農家資産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大植物에 대한 減價償却은 成木年齡 이상에 대해서만 減價償却을 하고 成木年齡 이하에 대한 植物은 去來價로 평가하여 年末價格에서 年初價格을 差減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農家에서는 大植物에 대한 去來가 거의 없기 때문에 價格을 객관적으로 算定할 基準價格이 없어서 評價에 어려움이 많았다.

(7) 비닐, 연탄, 油類등의 農業生産資材 在庫量이나 새끼줄, 가마니, 볏짚 등의 在庫農産物의 調査가 누락되어 農業經營費가 사실상 過大評價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在庫 農產物表에서 調査品名이 일반벼, 통일벼, 일반쌀, 통일쌀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現在는 收買價 2등품으로 평가하지만 評價上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8) 農業用 施設物中에서 슬레이트 집이나 보온덮개, 블록조, 지주 등에 대한 耐用年數가 調査 要領에 明示되어 있지 않아서 減價償却에 어려움이 있다.

4. 農家財産 評價上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가. 農家財産의 分類

農家經濟調査에서는 調査原簿에서 農家財産의 變動狀況을 調査하고 있는데 農家財産이란 〈表 4-3〉에서와 같이 農家가 소유하고 있는 資産 및 負債의 總額으로 定義한다. 그러나 農家經濟調査에서는 狹意의 農業部門 財産만을 調査 記帳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兼業用 財産이나 家計用인 家具 家財 및 의복, 小農機具 및 小植物은 農家財産에서 제외하고 있다.

表 4-3 農家財産分類

農家財産			
資産			負債
固定資産	流動資産	流通資産	
土地, 建物 및 構築物, 大農機具 大植物 大動物	在庫農産物 在庫畜産資材 小動物	現金 準備金 未收入金	借入金 未拂金

資料 :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査要領」, 1985.

〈表 4-4〉는 日本의 農家經濟調査 農家財産分類를 나타내는 表로서 韓國의 農家財産分類와 서로 相異함을 알 수 있다. 즉 韓國에서는 兼業用 財

產은 農家財產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日本에서는 100만엔 미만의 農外事業專用 建築은 제외시키나 取得價格이 100만엔 이상되는 兼業用 建物은 財產에 포함하고 農業 및 農外用, 家計用의 四輪自動車, 三輪自動車, 오토바이, 스쿠터 등 購入價格이 100만엔을 넘는 車輛들도 農家財產으로 取扱하고 있다. 그리고 韓國에서는 한우, 젖소, 고기소, 말, 양(염소), 돼지, 꿀벌 등을 大動物로 분류하여 固定資產으로 취득하고 있고 닭, 오

表 4-4 日本의 農家財產分類

農家財產			
資產			負債
固定資產	流動資產	流通資產	
土地 및 土地權利 建物 및 構築物 自動車 大農具 및 集合農具 植物 牛馬. 肥育牛, 中小動物	未處分農產物 農業生產資材	現金 貯蓄 未收入金	借入金 未拂金

資料 : 日, 農林水產省, 「農家經濟調査解說」, 1980.

表 4-5 農業外로 使用되는 建物, 機械, 船舶등 農外固定資產 賣却收入 分類 調査

단위 : 조사원수, %

	폐품수입 (214) 으로分類	其打農作物以外收入 (082) 로 分類	其他兼業收入 (118) 로 分類	財產的 收入으로 分類	해당없음	計
調査員數	3	4	5	175	9	196
%	1.5	2.0	2.6	89.3	4.6	100

* ( ) 안은 코드번호

리, 토끼, 개 등은 小動物로 분류하여 流動資産으로 취득하고 있으나 日本에서는 돼지, 닭, 면양, 염소, 토끼, 오리, 꿀벌 등을 中小動物로 區分하여 固定資産에 포함하고 있다.

〈表 4 -5〉의 農家經濟 調査員들을 對象으로 실시한 設問調査를 보면 農業外로 使用되는 建物, 機械, 선박 등 農外固定資産 賣却收入을 89.3%의 調査員이 財産的收入으로 分類하여 記入하고 있는데 실제로 農家經濟調査에서는 兼業用 財産을 農家財産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農家財産으로 定義되지 않는 兼業用 財産의 賣却收入을 財産的收入으로 分類 記帳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따라서 韓國에서도 日本에서와 같이 完全 兼業用 財産이더라도 一定額數 이상의 財産은 農家財産으로 定義하여 調査함이 타당할 것으로 思料된다. 또한 家計用인 家具, 家財, 패물 등의 賣却收入은 폐품收入 혹은 其他雜收入으로 分類 調査하고 있으나 高價의 패물이나 골동품 등의 販賣收入은 財産的收入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일부 調査員들의 意見도 있었다.

그리고 닭, 오리, 토끼 등의 小動物도 飼育마리 수가 많을 경우에는 이것도 日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農家財産評價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나. 固定資産의 評價

固定資産이라 함은 農業經營에서 生産手段으로 使用되는 土地, 建物, 構築物, 大動植物 및 大農機具等의 資産을 말하며 農家經濟調査에서는 原簿에서 土地資産調査表, 農業用施設物表, 大農機具表, 大動物表 및 大植物表로 區分 調査하고 있다.

固定資産은 比較的 長期間에 걸쳐 經營에 사용되는 資産이며 販賣를 目的으로 한 資産이 아니며 建物이나 農機具같이 그 實體를 肉眼으로 볼 수 있는 有形固定資産과 經營에 비교적 長期間 사용되는 資産이기는 하지만 그 實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權利로서 존재하는 資産인 特許權, 鑛業權 등의 無形固定資産이 있는데 日本의 경우는 小作權, 耕作權, 水利權 등의 土地權利도 固定資産으로 分類 調査하고 있는 것이 韓國과

다른 점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固定資產은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使用可能年數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取得原價에서 그 固定資產이 使用不可能하게 되었을 때 처분한다면 받을 수 있으리라 豫想되는 金額(殘存價格)을 差減한 金額을 그 固定資產의 使用可能年數(耐用年數)에 걸쳐서 每年間의 收益이 부담할 費用으로 配分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土地, 建物, 農機具 및 大動植物로 분류되는 固定資產들은 이들 각각의 資產이 상호 異質的인 特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는 별개의 評價方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資產의 한 가지 評價方法은 어느 特定資產에 대하여는 유용하나 다른 資產에 대하여는 意義가 없으므로 획일적인 評價方法은 무모하며 資產의 特性에 알맞는 方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販賣를 目的으로 하지 않고 經營活動에 使用되는 固定資產을 評價하는 데는 時價主義보다는 原價主義를 채택하는 것이 通說로 되어 있으며 日本의 農家經濟調査에서도 原價主義에 의하여 財產의 取得價格으로 財產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物價의 顯著한 騰貴나 資產에 대한 급격한 需要增大로 인하여 그 資產의 名目的 또는 實質的 價値가 증가된 경우에 原價主義를 고집하는 것보다 그 資產을 再評價하여 實質價値를 유지시켜야 한다. 流動資產은 回轉速度가 빠르고 時價를 구현할 수도 있지만 固定資產은 回轉이 느리고 時價와의 接觸도 거의 없으므로 物價가 등귀하면 原價로 기록된 固定資產의 價格은 부당하게 저렴한 것이 되고, 따라서 減價償却費의 計上도 불충분하고 名目上의 架空利益만 생긴다. 이 경우에는 資產價値를 수정하고 올바른 減價償却費를 計上하여 정당한 利益을 표시하고 名目利益을 배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로 상이한 여러가지 資產評價方法과 節次는 각각 특징이 있으므로 資產의 特性에 맞는 方法을 적용해야 하지만 評價方法이 한번 결정되었으면 어느 方法이든 한 가지를 繼續해서 적용하고 한 두번만을 局限하여 다른 節次에 의한 結果와 비교하여 보면 상이한 차이가 있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거의 같은 結果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어느 方法이든 한번 채택하였으면 이 方法이 계속해서 적용되기를 요구하는 繼續性의 原則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어느 것이든 採擇된 節次를 계속해서 적용

하면 오랜 동안에는 결국 거의 같은 結果가 되는 것이므로 한번 결정한 方法은 특별한 이유없이 함부로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1] 土地의 評價

農業用土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農家의 收益을 直接 算出하는 資產이므로 장래 豫想收益額을 現在價로 割引하는 收益價法에 의한 直接評價法이 유용하나 農水產部에서는 편의상 時價法을 적용하여 土地를 評價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는 年度初 現在의 法定評價額(地方稅法에 의한 固定資產稅의 課稅標準 評價額)에 의하여 土地를 評價하며 땅값의 올라간 價値를 資產評價에 포함하지 않고 年度初價格을 그대로 年度末價格으로 한다.

그러나 토지의 評價는 農家所得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으므로 評價方法上 특별한 問題點은 없다.

[2] 農業用施設物 및 大農機具의 評價

建物 및 農機具와 같은 耐久性資產은 取得과 더불어 그 資產의 일부가 소모되므로 一定時點에 있어서의 資產의 現在價値는 取得原價 또는 總生產原價에서 그 期間中 소모된 減價償却費를 뺀 殘額으로 결정되는 것이 原則이다.

그러나 이러한 方法은 繼續的인 物價의 上昇 및 價格의 變動이 심할 때는 財政狀態를 명백히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 減價償却費를 뺀 原價方法을 資產評價의 기초로 삼는다면 資產의 評價額은 실제 資產額보다 過少評價되므로 資產폐기시 減價償却充當金으로는 그와같은 資產을 購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正確한 損益計算이 되지 않는 동시에 그 農家의 債務負擔能力 및 支拂能力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결점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資產을 再生產 또는 再調達하려면 얼마의 費用이 소요될 것인가를 기준으로 資產을 評價하는 方法인 再調達價方法이 이용될 수 있는데 이 方法은 현재의 條件下에서 資產을 新築하거나 再調達할 때 얼마의 費用이 소요되겠는가를 基準으로 新調價를 年初에 계산한 후

그동안의 減價償却費를 뺀 殘額을 現在價로 計上하는 방법으로 建物 및 農機具같은 耐久性 固定資産을 評價하는데 적합하다. 따라서 農水産部의 農家經濟調査에서는 農機具 및 建物 등의 資産評價를 費用價 또는 再調達價方法에 의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日本에서는 土地 이외의 固定資産은 取得價格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取得價格이 不明한 경우는 取得年度의 「農畜産業用 固定資産評價標準」에 나타난 價格을 適用하여 財産의 價値上昇分을 資産評價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③ 大動植物 評價

한우, 젖소, 고기소, 말 등과 같은 大動物은 農家經濟調査에서 時價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大動物을 評價할 때 年齡 및 重量뿐 아니라 使用年數 및 未經過年數等도 조사한다. 그리고 大植物의 경우에도 時價로 평가하나 果樹 및 立木처럼 所得을 漸增的으로 산출하다가 一定期間 후부터 減少되는 경우는 收益價法에 의해 평가해야 하며 만일 어떤 果樹가 收益의 算出은 없고 다만, 生育 및 成長만을 한다면 이 果樹의 評價方法은 만일 去來價格이 있으면 時價法에 의하나 時價가 없을 때는 그 時點까지 투하된 費用으로 資産을 평가하는 費用價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果樹, 뽕나무 등의 大植物은 農家에서 去來가 별로 없기 때문에 時價를 알기 어렵고 育成中 成長增加額도 價格을 算定할 基準値가 없어서 評價에 客觀性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으며 大動物의 경우는 時價의 變動이 심하기 때문에 年初와 年末 去來價格差異가 클 때는 農家所得이 過大 혹은 過少評價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와 같이 價格變動이 심한 大動物의 경우는 過去 2～3년간 去來價格의 移動平均値나 그 해의 平均去來價格을 評價基準으로 삼거나 日本과 같이 取得價格을 基準으로 年度初 現在價에 成長에 의한 연중 增殖額과 年度內增減額(減價償却 포함)을 가산하여 年末 現在價를 算出함으로써 大動物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客觀的인 評價方法이 될 것이다. 또한 農家經濟調査에서는 大動物 成長에 의한 증가나 감소를 평가하여 農家所得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表4-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成長에 의한 增殖額을 평가하지 않는 農家經濟調査員이 27.6%나 되며 조사하더라도 農家所得에 年中增殖額을 所得에 포함시키지 않는 調査員이 8명이나 되는 등 大動物成長 評價에도 一貫性이 없었는데 이는 大動物을 時價로 평가하기 때문에 調査員들이 年末評價額에 成長에 의한 增殖分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思料된다.

表 4-6 大動物 成長에 의한 增加나 減少評價與否 調査

단위 : 조사원수, ( ) 안은 %

區分 \ 道		京畿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濟州	計
한다	농가소득에 합산	13	14	5	24	22	26	13	14	4	142 (72.4)
	농가소득에 합산 안함	-	3	-	*4	1	-	-	1	-	
안 한 다		12	0	12	0	0	4	15	11	0	54 (27.6)
計		25	17	17	26	23	30	28	26	4	196 (100)

註 : * 은 大動物 增加만 所得에 評價하고 減少는 所得에 合算안함.

다. 流動資產의 評價

年末에 농가에 남아있는 米穀, 麥類, 雜穀, 豆類 등의 在庫農產物과 農家에서 쓰다 남은 肥料, 農藥, 飼料等의 在庫生產資材는 農家에서 去來가 빈번한 流動資產이기 때문에 農家經濟調査에서는 이러한 販賣性 農產物 및 購入 生產資材의 評價를 時價에 의한 直接評價法을 하고 있다. 그러나 農家에서는 年末에 상당량의 在庫農產物을 보유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므로 在庫資產 評價方法에 따라서는 農家所得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農家經濟調査에서 현재와 같이 時價를 기준으로 農業收入을 계산하면 農產物이나 生產資材의 價格變動이 심한 경우에는 이들 在庫資產의 評價에 客觀性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시가로 價格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農民이 생산한 農產物이 市場價格을 受取하기 위해서는 시장까지 출하하는데 소요되는 輸送費, 販賣費等 追加費用은 時價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리고 生產資材의 調査項目에서도 農家에서 年末에 보유하고 있는 油類나 연탄, 비닐, 골재等에 대해서는 이러한 品目을 조사할 項目이 없기 때문에 評價에서 누락되고 있으나 〈表4-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農家經濟調査 調査員의 8.2%는 이러한 品目들도 年末에 在庫生產資材로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연중에 구입한 生產資材를 年末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購入했을때와 價格差異가 있는 경우 이것을 時價로 評價하면

表 4-7 農家에서 年末에 保有하고 있는 비닐, 골재, 연탄, 유류 등의 在庫生產資材 評價與否 調査

단위 : 조사원수, ( ) 안은 %

區分 \ 道	京畿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濟州	計
한 다	1	1	5	0	0	3	2	3	1	16(8.2)
안 한 다	24	16	12	26	23	27	26	23	3	180(91.8)
計	25	17	17	26	23	30	28	26	4	196(100)

差額만큼은 農家所得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日本에서는 農業生產資材를 평가할 때 品目別로 年度內의 平均單價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平均單價를 算出할 때는 購入附帶費를 가산한 取得價格을 購入數量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연중 價格變動에 의하여 所得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있으며 未處分 農產物에 대해서도 그 農產物의 生產原價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生產原價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農產物을 收穫한 年度의 生產最盛期의 時價인 農家庭先販賣價格에 의해 評價하며 다만 쌀에 대해서는 基準이 되는 公定價格을 地域別로 告示하여 이 基本價格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價格適用基準으로는 時價에 의한 市場價格이 庭前價格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므로 自家消費農產物이나 在庫農產物을 일률적으로 時價에 準하여 평가하면 農業收入이 과대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農家經濟調査에서 生產現物이나 在庫生產資材를 평가할 때 時價의 變動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標準價格이나 平均價格을 適用하는 것도 評價의 한 方法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닭, 오리, 토끼, 개 등의 小動物은 農家經濟調査에서 流動資產에

포함되나 小動物에 대한 연중 增減評價額은 農業收入에 가산되지 않기 때문에 닭이나 오리 등 小動物의 飼育頭數가 많은 農家의 所得은過少 혹은 過大評價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小動物의 연중 增減額도 農家所得에 포함하든지 小動物도 大動物과 마찬가지로 農家固定資產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방법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라. 農家固定資產의 減價償却

農家固定資產의 대부분은 使用 또는 時間의 經過에 따라서 그 經濟的 價値가 減耗된다. 그러므로 이 固定資產에 투하된 原價額은 그 資產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할당하여 費用(減耗分)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이 費用額을 결정하는 計算節次를 減價償却이라 하고 그 費用을 減價償却費라 한다. 그리고 減價償却을 하는 期間, 즉 固定資產의 取得에서 廢棄까지의 期間을 耐用年數라고 하는데 耐用年數는 사실상에 있어서 耐用年數完了後가 아니면 정확한 것이 되지 못하며 어디까지나 推定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 耐用年數는 固定資產의 使用可能 推定年數이며 減價額計算에 있어서 필요한 주요 要素이지만 耐用年數는 동일한 固定資產이라도 그 使用程度 및 維持程度에 따라 상이하며 經驗에 의한 平均 使用可能年數라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減價償却費計算에 이용되는 殘存價格이란 固定資產이 全耐用年數에 도달하여 폐기처분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處分價値를 말하는데 建物의 경우는 사실상 殘存價格이 없고 오히려 그 建物을 제거하는데 追加費用이 더 소요되며 기타 固定資產은 약간의 殘存價格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固定資產의 取得原價를 그 耐用年數에 걸쳐서 費用으로 배분할 때는 이 殘存價値를 取得原價에서 差減한 殘額만을 배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法人稅法上에서는 固定資產의 殘存價値는 取得原價의 1割로 가정하고 있고 固定資產의 使用可能年數인 耐用年數表가 표시되어 있으며 財務部 所關의 韓國鑑定院에서도 獨自的으로 有形固定資產의 耐用年數表를 必要에 따라 발표하고 있다. 固定資產을 그 耐用年數에 걸쳐서 비용으로 배분하는 減價額의 算出方法에는 每年 一定額을 償却하여 가는 定額

法과 固定資產의 每決算期前 純殘額에다 일정한 減價率을 곱하여 每年度의 減價額을 산출하는 定率法 그리고 減價償却費를 期間에 따라 計算하지 않고 使用時間數에 比例하여 計算하는 方法인 比例法等 여러가지 方法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法人稅法에는 定率法을 모든 有形固定資產의 減價償却費 計算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農家經濟調査에서는 償却資產의 減價償却 方法을 定額法에 의하여 〈表 4-8〉과 같이 算出하고 있는데 農家經濟 調査에서 사용되는 耐用年數는 農水產部 農水產統計管室에서 잠정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거 적용하고 있다.

表 4-8 農家經濟調査 固定資產의 減價償却方法

年度初 現在價	年初(再調達價) — 당해년도의 減價償却費 × 經過年數
年度末評價額	年度初 現在價 + 年內 增加額(處分差利益을 加算) - 年內 減少額(處分差 損失을 減함)
減 價 償 却 費	(年初 再調達時價 - 殘存價格) ÷ 耐用年數

〈表 4-9〉는 農家經濟調査 調査員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說問調査에서 農家資產 減價償却의 불합리한 점들에 대한 調査員들의 意見을 요약한 것으로서 同表에 調査員들이 지적한 바와같이 철근콘크리트 建物이나 벽돌 혹은 石造建物은 殘存價格이 없고 오히려 建物을 철거하는데 追加費用이 所要되는데 殘存價格率을 10%로 잡은 것은 不合理한 점이 없지 않다.

그밖에 〈表 4-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農家經濟調査 調査員들의 57.7%는 農家資產中 大動物에 대한 減價償却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理由들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農村에서 사육하는 大動物은 순수 使役用이 없고 肥育내지 새끼生產을 目的으로 사육되고 있으며 大動物의 評價도 時勢나 成長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에 年度末 再評價時 減價償却이나 成長에 의한 評價도 이미 計算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大動物은 大農機具나 다른 農家資產처럼 使用 및 마모에 따른 價格下落要因보다는 時勢에 따라 評價가 流動的이며 大動物의 特性 즉 암컷, 수컷, 飼育方法等에 따라 成畜年齡 以後에도 더 자랄수도 있고 成畜年齡以前에도 完全히 자랄 수 있는 바 一律

表 4－9 農家財産의 減價償却 問題點에 대한 調査員 意見要約

區分		內容
建物	주택	철근콘크리트건물, 벽돌 또는 석조건물은 내용년수가 지나 집을 헐었을 때 사실상 잔존가격이 없는데 잔존가격률 10%는 불합리
	창고	블록 스레트창고는 기타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내용년수 20년은 짧음
大動物	한우	잔존가격율 50%이나 60%로 높이는 것이 타당
	젖소	대부분 축산농가에서 7, 8세 정도면 착유량이 30%정도 떨어지나 9～10세까지도 경제적 타산이 맞아 10세까지는 젖소를 기르고 있으므로 내용년수를 8년정도로 잔존가격률은 40%정도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大農機具	감가상각에 삭제될 농기구	물레방아, 쟁기, 로타리등 대농구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농구, 손펌프, 양수기호수, 인력분무기, 인력제초기, 족탑탈곡기, 풍구, 손수레, 인력제승기, 인력가마니틀, 말, 저울, 육모상자, 그밖에 10,000원 미만의 대농구
	추가될 농기구	농업용자동차, 착유기, 냉각기, 사료절단기
	내용년수 불합리한 농기구	경운기쟁기, 손펌프, 발펌프, 동력분무기, 동력살분무기, 인력분무기, 손수레, 동력사료분쇄기, 말, 저울 등은 내용년수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양수기, 콤바인, 반작동탈곡기, 우마차, 육모상자, 기타쇠붙이 농구는 내용년수가 길음
	잔존가격율이 불합리한농기구	쟁기, 족탑탈곡기, 말, 저울등은 잔존가격율이 10%가 안됨

자료 : 조사원 상대로한 설문조사

表 4－10 大動物에 대한 減價償却의 必要性 與否 調査

단위 : 조사원수,( ) 안은 %

區分＼道	京畿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濟州	計
必要하다	15	1	7	14	9	11	18	8	0	83(42.3)
必要없다	10	16	10	12	14	19	10	18	4	113(57.7)
計	25	17	17	26	23	30	28	26	4	196(100)

的인 減價償却은 不合理하다. 세째 理由는 大動物은 價格變動에 따라서 所得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난 해와 같이 年末評價額이 年初評價額보다 월등히 적을 경우에는 다시 減價償却을 適用하기가 어렵다는 理由 등이다.

그 이외에도 償却資産에 대한 殘存價格率이나 耐用年數가 과거 20여년간 거의 변하지 않아서 現實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農家資產의 耐用年數나 殘存價格率을 現實에 맞도록 새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5. 農家所得 評價上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農家所得은 〈表 4-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農業所得과 農外所得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시 農外所得은 兼業所得과 事業外所得 및 移轉收入으로 분류되어 計算되는데 실제로 연말에 農家所得을 計算하려면 매일 매일의 農家去來狀況을 動態的으로 기록한 日計簿와 靜態的인 農家記錄 帳簿인 調査原籍을 동시에 집계하여 計算하여야 한다. 즉 農業粗收入을 계산하려면 日計簿에서 算出된 農業收入에 原籍에 記錄된 「未處分

表 4-11 農家所得 및 農家經濟剩餘 構成項目

區 分	構 成 項 目
農業粗收入	農業現金收入+農業現物收入+生產現物家計消費 +(在庫農產物增減額+大動植物增減額)
農業經營費	農業現金支出+農業現物支出+(在庫生產資材增減額 +減價償却額)
農業所得	農業粗收入-農業經營費
兼業所得	兼業收入-兼業支出
事業外所得	事業外收入-事業外支出
農外所得	兼業所得+事業外所得+移轉收入
農家所得	農業所得+農外所得
加處分農家所得	農家所得-租稅公課金
家計費	家計現金支出+現物家計消費+(減價償却費)
農家經濟剩餘	加處分農家所得-家計費-分家支出

* ( ) 안은 原簿 調査項目

在庫農產物 增減額」과 「大動植物 增減額」이 가산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農業粗收入의 計算에 農業現金收入뿐 아니라 農家에서 自家生產하여 家計에 消費한 現物도 農業收入에 포함되며 農業收入에 合算된 동일한 評價額이 家計支出에도 計算되는데 이는 農家經濟를 所得經濟面과 家計經

濟面으로 분리하여 취급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農家經濟調査結果에 의해서 發表되는 農家所得의 評價에 대하여 農民들은 現實보다 過大評價되고 있지 않은가 疑問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農民들이 農家所得統計가 실제보다 過大評價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理由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農家所得의 相當部分은 現金收入이 아닌 現物收入인데 農民들은 現金所得만을 所得으로 간주하는 경향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農民들이 家計에 소비하는 生産現物도 農家所得에 포함되며 84 년의 農家經濟調査에서 집계된 결과를 보면 在庫農産物 增減이나 大動植物 增殖에 의한 收入이 각각 7.0 %, 13.9 %나 되는데 農家에서는 이들 收入을 財産增加概念으로 생각하지 所得概念으로는 인식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둘째는, 在庫農産物이나 在庫生産資材, 大動植物評價方法에 따라서는 農家所得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데 農水産部의 農家經濟調査에서는 이러한 在庫農産物이나 大動植物을 時價로 평가하기 때문에 연중 價格變動이 심한 경우에는 時價評價方法이 適切한 방법일 수가 없다. 특히 大動植物中 소의 경우는 年末價格과 年初價格間의 時價變動이 심하기 때문에 時價로 評價했을 때 時價變動에 의한 價格差異도 農家所得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일률적인 時價適用은 불합리하다.

세째로, 〈表 4-11〉을 보면 農外所得은 農家가 自營하는 林業, 水産業, 商工鑛業 등에 의한 兼業所得과 勞賃俸給收入, 賃貸料, 小作料나 配當, 利子 等 事業外所得 및 農家의 非經濟活動으로 인한 收入 즉 사례금, 송금보조, 피증보조, 퇴직금等의 移轉收入이 포함되는데 피증보조 등 非經濟的 活動의 性格을 띠고 있는 移轉的 所得은 長期的인 觀點에서 農外所得에서 제외시키는 問題가 硏究 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所得이라는 것은 그 해의 經濟活動에서 얻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被贈補助 등의 收入은 그해의 經濟活動의 結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퇴직금은 그사람이 과거에 행한 일에 의해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현재 그 해에 일하며 받은 것이 아니다. 실제로 農家所得에서 移轉收入이 차지하는 비중은 84 년의 경우 17.3 %로서 매년 20 %

정도씩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農家所得에 포함시킴으로 해서 農家所得이 過大하게 算定됐다고 생각할수도 있다. 〈表 4-12〉는 農家經濟調査 調査員들을 대상으로 各 調査員들의 조사지구中 農家所得에 큰 영향을 미칠만큼의 퇴직금, 축의금, 조의금 등을 受領한 農家가 있는가에 대한 說問調査를 한 것으로서 전체 196 調査地區中 54.1 %나 되는 106 地區에서 207 件의 이러한 事例가 있었던바 거액의 퇴직금, 축의금을 받은 農家가 있음으로 해서 그 地域의 農家所得이 他年에 비하여 월등히 증가되거나 감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表 4-12 農家所得에 큰 영향을 미칠만큼의 退職金, 祝儀金, 弔儀金 受領農家 與否調査

단위 : ( ) 안은 %

道 \ 區分	있었다		없었다	計
	調査地區數	發生件數		
京畿	18	33	7	25
江原	13	23	4	17
忠北	6	8	11	17
忠南	14	32	12	26
全北	12	28	11	23
全南	10	15	20	30
慶北	18	35	10	28
慶南	14	31	12	26
濟州	1	2	3	4
計	106 (54.1)	207	90 (45.9)	196 (100)

結論的으로 農家所得統計에 대한 農民의 不信感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農家所得 統計作成過程의 홍보활동과 아울러 農家所得算出에 基礎가 되는 在庫現物, 大動植物 評價方法의 改善, 그리고 農家所得의 發表도 現金所得과 現物所得으로 區分 발표하여야 하며 統計資料의 利用者도 統計作成過程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해야 한다. 또한 農家의 非經濟活動으로 인

한 移轉收入도 農家所得에 直接 合算하는 대신에 日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加處分所得에만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思料된다.

6. 農家의 資金調達과 運用

가. 簿記的 側面의 農家經濟調査

農家經濟調査는 簿記의 樣式을 合理的으로 簡素化한 單式簿記形式을 취하고 있지만 單式簿記樣式의 調査라 해도 基本的으로는 複式簿記의 理論에 입각하여 調査 集計되고 있다. 즉 記入方法은 單式簿記式이지만 集計方法으로는 〈圖 4-3〉과 같이 日計簿에 의한 動態的인 計算과 原簿에 의한 靜態的 計算組織을 가지고 있다.

圖 4-3 農家經濟調査 計算組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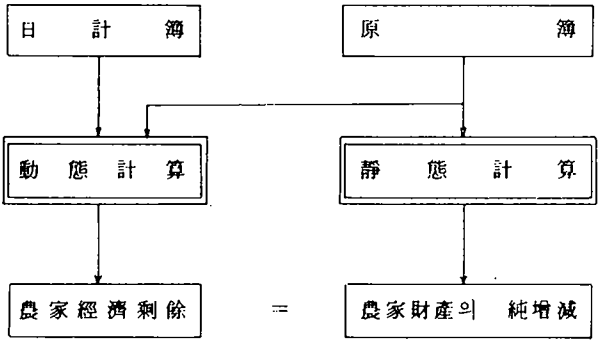

農家經濟調査의 決算에서도 農家財產의 計算과 損益計算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複式簿記의 原理에 입각하여 계산하고 있는데 複式簿記는 1년간 經濟活動을 「貸借平衡의 原則」[1] 과 「二重決算의 原則」[2] 에 의거 財產

註 1) 複式簿記에서 貸借平衡의 原則은 한 거래를 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이중으로 기록해 貸借를 항상 균형시키는 원리를 말한다.
2) 複式簿記의 決算에서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의 損益을 일치시켜서 資本의 增減 發生原因을 확실히 하여 決算을 檢證할 수 있도록 하는 原理를 말한다.

과 資本變動狀況을 明示하여 經營의 成果를 損益計算書와 貸借對照表에 나타내고 어떤 時點에 있어서의 資產과 資本의 狀態 및 損益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農家의 財產은 土地, 建物, 大農機具 등의 固定資產과 在庫農產物, 在庫生產資材 등의 流動資產 그리고 現金 및 準現金 등의 流通資產 및 負債로 構成되어 있고 資本은 資產에서 負債를 差減한 殘額으로 定義된다. 그리고 貸借對照表의 借邊에는 資產計定이 記錄되고 貸邊에는 負債와 資本計定이 記錄되는데 한편으로는 負本과 負債라는 반대 槪念을 가진 計定이 貸邊에 記入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資本을 農業經營의 資金原泉으로서 그 資金이 他人으로부터 빌린 것인가 혹은 자기가 出資한 自己資本인가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시에 貸邊欄에 記帳하고 있다.

그런데 貸借對照表의 等式인 「資產=負債+資本」式은 1년간의 經營活動에 따라 期末에는 「年末資產+費用=年末負債+年初資產+收益」이 되고 이것을 변형하면 「年末資產-年末負債-年初資本=收益-費用」의 等式이 성립되는데 이것이 損益方程式으로서 이 식에서 收益이 費用보다 많다면 純收益이 얻어진다. 이 損益方程式을 變形하면 「年末資本 =年末負債+年初資本+純收益」의 새로운 貸借對照表 等式이 성립되며, 「純收益+費用=收益」의 方程式은 損益計算書 等式이 되는데 이러한 關係를 그림으로 表示하면 〈圖 4-4〉와 같다.

圖 4-4 農家經濟調査의 複式簿記 原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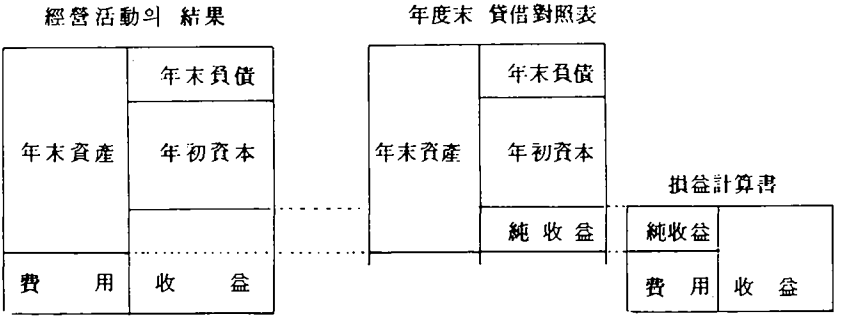

나. 農家의 資金循環 分析

農家經濟調査 農家의 매일 매일의 去來를 記錄한 日計簿는 매월 電算機에 입력되어 月別 農家의 動態的인 現金收支가 決算되며 年末에는 이들 月別 日計簿資料가 合算되어 當年度 決算이 행해진다. 그러나 日計簿에 의한 動態的인 現金收支의 決算은 靜態的인 記錄帳簿인 調査原簿에서 조사된 내용이 첨가되어 최종적인 결산이 행해지는데 예를 들면 農業經營部門의 所得的收入이 算出되려면 日計簿에 의한 農業收入에 調査原簿에 기록된 「在庫農產物 增減額」과 「大動植物 增減額」등이 加算된다. 따라서 이 같은 方式에 따라 動態計算에 의한 農家經濟 最終成果인 「農家經濟剩餘」가 산출되며 理論的으로 이 農家經濟剩餘는 動態計算의 最終結果인 「農家財產의 純增減額」과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1984년의 「農家經濟調査 結果報告」에 의한 農家의 資金 調達과 運用額을 살펴보면 〈表 4－13〉과 같이 經常收支의 결과인 「農家經濟剩餘」와 財產的收支의 결과인 「農家財產 純增減額」이 불일치함으로 해서 665,441원, 즉 4.8%의 差額이 생겼다. 이렇게 「農家經濟剩餘」와 「農家財產純增減額」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經營外의 損益이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例를 들면, 土地나 建物의 경우 年度末 時點에서 年度初보다 評價額이 상승했다고 해도 年度末에 實現利益을 計上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土地나 建物을 賣却한 경우 그 販賣收入은 日計簿의 收支欄에 財產的收入으로 기록되어 現金이라는 資產은 증가하지만 土地나 建物의 資產은 감소한 셈이다. 이 경우 資產의 賣却價格이 年初의 價格보다 높을 때는 賣却價格과 年初價格과의 差額에 대하여는 資產(現金)이 增加한 셈이지만 이 資產處分 差利益(혹은 資產處分 差損失)은 所得計算上에는 삽입되지 않으므로 〈表 4－13〉과 같이 資金調達과 運用額이 불일치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이러한 農家의 資金調達과 運用額의 일치를 위해서는 動態計算에 따라 算出된 「農家經濟剩餘」에 經營外損益 즉 資產處分 및 資產分割에 따른 利益이나 損失 그리고 偶發損失 등을 가산하거나 공제한 「農家

表 4－13 農家의 資金調達과 運用, 1984

단위 : 원

區 分	資金調達		資金運用	
	去來計定	金額	去來計定	金額
經常收支	農業粗收入	5,276,692	農業經營費	1,577,374
	兼業收入	422,056	兼業支出	229,818
	事業外收入	978,412	事業外支出	216,069
	移轉收入	895,233	租稅公課	81,718
	小計	7,572,393	家計簿	4,272,220
			分家支出	32,058
			小計	6,409,257
財產的收支	固定資產賣却	1,677,863	固定資產購入	1,754,056
	流動資產減少	3,363,828	流動資產의 增加	3,850,765
	借入金의 增加	1,932,188	借入金의 減少	1,750,961
	小計	6,973,879	小計	7,355,782
現金	年初保有額	113,253	年末保有額	229,045
	不一致	-665,441 (4.8)		
合計		13,994,084 (100)		

* ( )안은 %

經濟純剩餘」를 산출해서 靜態計算의 成果인 「農家財產 純增加額」과 일치시키는 操作을 행하여야 하는데 日本에서는 〈表 4－14〉와 같이 經營外損益 項目들을 定義하여 「農家經濟純剩餘」를 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最終的인 農家經濟 調査結果를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의 形式으로 나타내면 〈表 4－15〉, 〈表 4－16〉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런데 〈表 4－14〉의 經營外損益項目 중 現金, 貯蓄 등 流通資產에 대한 도난, 분실 등 偶發損失이나 災害損失을 우리나라에서는 家計費의 기타 支出項目으로 分類計算하고 있으나 日本에서는 經營外損失로 處理하고 있는데 이러한 偶發損失은 財產的損失로 보아 經營外損失로 分類 處理함이 타당하다.

結論的으로 經常的收支와 財產的收支가 農家經濟調査에서는 명확히 區分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분을 정확히 하여 農家資金의 調達額과 運用額이 일치토록 해야 할 것이다.

表 4－14 經營外 損益項目

經營外損益	
經營外利益	經營外損失
1. 固定資產 分割에 따른 增加額	1. 固定資產 分割에 따른 減少額
2. 固定資產 賣却에 의한 處分差 利益	2. 固定資產 賣却에 따른 處分差 損失
3. 附加減價償却額	3. 固定資產의 災害, 耕作地 流失, 拔根에 따른 減價額
4. 現金, 貯蓄 등의 資產分割에 따른 利益	4. 現金, 貯蓄 등의 資產分割에 따른 損失
5. 貯蓄 등 資產의 處分에 따른 利益	5. 貯蓄 등의 資產處分에 따른 損失
6. 負債免除	6. 現金, 貯蓄 등의 偶發損失

農家經濟剩餘＋經營外利益－經營外損失＝農家財產純增減額

資料：日, 農林水產省,「農家經濟調査 解說」.

* 여기에서 固定資產이라 함은 土地, 建物, 대동식물을 제외한 資產을 말함.

表 4－15 農家經濟 貸借對照表

借邊	貸邊
固定資產	負債
○ 土地	資本
○ 建物	(年初自己資本)
○ 大農機具	當期純剩餘
○ 大動植物	
流動資產	
○ 未處分農產物在庫	現在의 自己資本
○ 在庫農產資材	(純財產)
流通資產	
○ 現金	
○ 準現金	

表 4－16 農家經濟 損益計算書

借 邊	貸 邊
○ 農業經營費	○ 農業粗收益
○ 農外支出	○ 農外收入
○ 租稅公課	○ 移轉收入
○ 家計費	資產分割에 의한 增加額
○ 分家支出	資產處分差利益
資產分割에 의한 減少額	附加減價償却費
資產處分差損失	負債免除額
偶發損失	農家經濟剩餘에 加算해야 할 金額
農家經濟剩餘로부터 공제할 金額	
○ 農家經濟純剩餘	

7. 農家經濟調査統計 活用 增大方案

가. 農家經濟 統計資料 蒐集上의 問題點

農家經濟調査資料는 農家經濟와 經營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資料로서 이 統計資料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資料蒐集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農水產部에서는 보다 정확한 統計資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전국 200개 調査地區에 標本地區當 1명씩의 專擔調査員을 常住시켜 10戶씩 標本農家에 대한 農家經濟調査 및 生產費調査, 糧穀消費量調査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農家經濟調査는 調査內容이 워낙 방대하고 複雜할 뿐 아니라 農家經濟調査의 構造 및 調査內容에 숙련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오랜 期間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表 4－1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의 農家經濟調査 調査員들의 勤務年數를 보면 1年 이하 勤務한 調査員들이

38.3%나 되며 專擔調査員의 이동도 심한 현상이다.

이러한 現象은 統計調査에 있어서 非標本誤差의 增加原因이 될수도 있는데 실제로 農水産 統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標本誤差보다는 非標本誤差라 할 수 있다. 統計調査에서 이러한 非標本誤差의 發生原因으로

表 4－17 農家經濟調査 調査員 勤務年數

單位：人, (　)안은 %

道 \ 期間	1 年 以 下	2 年 以 上 5 年 未 滿	5 年 以 上	計
京　畿	8 (32.0)	11 (44.0)	6 (24.0)	25
江　原	5 (29.4)	4 (23.5)	8 (47.1)	17
忠　北	5 (29.4)	11 (64.7)	1 (5.9)	17
忠　南	16 (61.5)	7 (26.9)	3 (11.6)	26
全　北	7 (30.5)	5 (21.7)	11 (47.8)	23
全　南	12 (40.0)	12 (40.0)	6 (20.0)	30
慶　北	14 (50.0)	11 (39.3)	3 (10.7)	28
慶　南	8 (30.8)	16 (61.5)	2 (7.7)	26
濟　州	-	2 (50.0)	2 (50.0)	4
計	75 (38.3)	79 (40.3)	42 (21.4)	196

는 調査員에 대한 業務量의 過多程度, 調査員에 대한 處遇, 調査員의 能力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調査員들이 調査方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調査에 임하는 자세가 성실치 못하다면 필연적으로 非標本誤差가 발생한다. 그러나 전국의 農家經濟調査 調査員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設問調査結果를 분석해 보면 내용이 조금 애매한 경우 같은 調査內容에 대하여 道別로 解析하는 方式이 서로 相異할 뿐 아니라 같은 道內에서도 서로 다르게 理解하여 統計를 작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예로서 農家에서 공동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農機具도 減價償却과 財産評價를 하고 있는가 라는 設問에 대하여 〈表 4－18〉과 같이 46.9%의 調査員은 평가한다라고 응답했고 19.4%는 평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借入時와 返濟時間에 價格差異가 발생한 現物負債는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說問에는 借入時의 評價額으로 처리한다고 대답한 調査員이 29.6%, 差額을 利子로 처리하여 評價한다고 응답한 調査員이 59.7%가 되었으며 道別로도 서로 다르

表 4－18 農家에서 共同購入 使用하는 農機具에 대한 財産評價 및 減價償却 與否調査

單位：調査員數, ( )안은 %

區分＼道	京畿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濟州	計
한 다	18	12	10	22	0	17	10	1	2	92 (46.9)
안 한 다	2	4	2	1	11	5	6	7	-	38 (19.4)
해당없음	5	1	5	3	12	8	12	18	2	66 (33.7)
計	25	17	17	26	23	30	28	26	4	196 (100)

表 4－19 借入時와 返濟時 評價額差異가 있는 現物負債의 評價方法 調査

道＼區分	借入時 評價額으로 處理	差額을 利子로 處理	그런 경우 없음	計
京畿	15	9	1	25
江原	9	7	1	17
忠北	4	10	3	17
忠南	0	*26	0	26
全北	1	22	0	23
全南	3	23	4	30
慶北	16	9	3	28
慶南	9	8	9	26
濟州	1	3	0	4
計	58 (29.6)	117 (59.7)	21 (10.7)	196 (100)

* 價格上昇時는 負債表에 月中借入額 下落時는 月中返濟란에 記入하고 日計簿 收入 支出內容에는 記入하지 않음

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다르게 평가함으로 해서 非標本誤差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전국의 農家經濟調査 調査員들과 統計擔當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적어도 1년에 1～2회씩은 農家經濟調査方法 및 調査上의 問題點들에 대한 討論과 教育을 定期的으로 실시하는 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農家經濟調査는 農家에서의 매일 매일의 去來狀況을 記錄하는 것이므로 農家에서 調査에 적극 협조해야 정확한 統計가 작성될 수 있는데 〈表 4－20〉과 같이 調査에 非協助的이거나 記帳能力이 없는 農家도 13.9%나 되기 때문에 記帳能力이 없거나 非協助的인 農家는 標本農家에서 제외하여 대체하는 方法도 非標本誤差를 줄이는 한

表 4－20 調査에 非協助的인 農家比率

單位：戶數, %

區分 \ 道	京畿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濟州	計
標本農家	250	170	170	260	230	300	280	260	40	1,960
非協助農家	25	25	17	38	39	29	44	55	1	273
比率 (%)	10.0	14.7	10.0	14.6	16.9	9.7	15.7	21.2	0.3	13.9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調査員에 대한 처우도 非標本誤差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바 調査員들의 대부분이 長期間 한 調査地區에 常住함으로써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고 調査에 싫증을 느끼기 때문에 調査員들의 사기를 높이고 農家經濟統計의 正確度를 높이기 위해서는 專擔調査員의 處遇改善이 先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標本誤差와 非標本誤差의 問題

農家經濟調査와 같은 標本調査는 調査對象의 일부를 調査해서 이 結果에서 전체에 대한 경향을 추정하기 때문에 資料의 蒐集에서 整理에 이르는 調査의 全過程에 있어서 時間, 努力, 費用이 크게 절약되며 그만큼 정밀한 調査를 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그러나 전체의 일부만을 조사하는 標本調査는 調査에 의해서 얻어진 結論이 사실 그 자체가 아니고 推定値이기 때문에 반드시 標本誤差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 標本誤差는 그 크기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誤差의 크기를 감안하여 統計 結果値를 해석 이용해야 하는데 1985 년도 農家經濟調査資料에 의해서 農家經濟調査 주요 항목별 標本誤差를 살펴보면 〈表 4－21〉과 같다. 同表를 보면 農家所得의 標本誤差는 1.4%, 農業所得의 標本誤差는 1.9%, 農外所得의 標本誤差

는 2.5%로서 精度가 매우 높았으며 農業所得의 構成要素인 農業粗收入의 標本誤差는 2.1%, 農業經營費의 標本誤差는 3.3%로 역시 精度가 높았으나 農外所得을 구성하는 兼業所得, 事業外所得의 標本誤差는 각각 10.7%, 4.1%로 精度가 떨어졌다.

그러나 標本에 의한 統計調査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標本誤差보다

表 4-21 1985年度 農家經濟調査 主要項目의 精度

單位 : %

項目	標本誤差
農家所得	1.4
農業所得	1.9
農業粗收入	2.1
農業經營費	3.3
兼業所得	10.7
事業外所得	4.1
農外所得	2.5
移轉收入	2.8
租稅公課	3.9
家計費	1.3
分家支出	24.3
加處分所得	1.4
農家經濟剩餘 및 損失	6.7

는 非標本誤差인데 그 이유는 標本誤差는 그 크기를 추정할 수 있으나 非標本誤差는 誤差의 精度 및 發生原因을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非標本誤差의 發生原因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調査員 能力 이상으로 業務量이 과다할 경우에는 非標本誤差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즉 調査員의 業務量增加에 비례해서 人力增員이 뒤따라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 非標本誤差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며 調査員들의 사기는 非標本誤差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調査員에 대한 處遇改善도 非標本誤差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은 農家經濟調査員들을 對象으로 실시한 設問調査에서도 여러 調査員들이 지적한 사실이다.

그리고 調査員들의 能力과 誠實性도 非標本誤差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

한 것으로서 調査員들이 調査方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 調査에 임하는 자세가 성실하지 못하다면 非標本誤差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調査員들과 調査擔當 實務者들을 대상으로 調査方法 및 農家經濟統計理論에 관한 教育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 農家經濟調査 統計活用上의 問題點

農水産統計는 農業統計 自體의 不確實性 뿐 아니라 그 發表內容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발표되는 結果値에 대한 의문이 종종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統計資料에 대한 不信의 원인으로는 이 統計에 대한 인식부족이 또한 없지 않은 바, 統計利用者는 統計가 지닌 實證力을 과신한 나머지 그것을 絶對的인 信賴性을 가진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統計는 항상 어떻게 어떠한 조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를, 또한 어떻게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신중한 이해와 비판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農家經濟調査의 活用上에서 문제점들은 統計利用者 자신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것과 統計의 蒐集, 分析過程에서 오는 것들이 있다. 즉 統計値에 대한 結果만을 과신하여, 무엇때문에 이러한 統計値가 생산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들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이 없이 통계를 이용함으로써 이것이 통계불신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예로서 農家의 所得을 산출할 때 農家經濟調査에서는 農家單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經濟活動 즉 大動植物 增減, 生産現物家計消費, 在庫農産物增減額, 在庫生産資材增減額 등을 포함한 모든 농가의 생산활동을 감안하여 소득을 추정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現金收入만을 소득으로 인식하여 소득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의 불신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統計作成過程의 홍보활동과 더불어 統計資料의 발표와 함께 수집된 資料의 분석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農家經濟調査資料를 利用機關 및 利用目的, 方法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되어 있고 이용자가 統計數値를 활용함에 있어서 혼란이나 착오가 없도록 충분한 주석이 붙어 있는데 參考로 日本의 農家經濟

調査의 利用狀況을 보면 〈表 4－22〉, 〈表 4－23〉, 〈表 4－24〉와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經濟發展과 더불어 農家經濟統計도 다양하게 분석 이용될 필요가 있는데 統計資料 整備 및 分析을 위하여 統計分析 常設專擔機構를 農村經濟硏究院에 설치 운영할 것이 요청되며 현재 地帶別, 耕地規模基準으로만 발표되고 있는 農家經濟統計로 農家業態別, 農業地帶別, 地域別로 보다 다양하게 발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表 4－22 日本의 月別 農家經濟 收支結果 利用狀況

公表範圍	利用機關	利用目的	利用方法및 利用項目
全國計 農業地域別	農林水産省 大臣官房	農家經濟의 動向을 파악하기 위한 資料 農業生産과 需要動向을 파악하기 위한 資料	農家經濟 指標
	食糧廳	米價算定에 있어서 農家經濟의 動向을 파악하기 위한 資料	〃
	總理府	「日本統計月報」의 作成, 家計調査結果와의 比較	農家經濟의 主要指標 家計費
	經濟企劃廳	經濟豫測의 基礎데이타 國民所得 算定의 農業所得 推計資料 經濟白書, 閣議 發表의 月例 經濟報 參考資料 産業別 國內 總生産 및 個人消費 支出의 推計데이타	農家經濟의 主要指標, 農家世帶의 消費支出 動向 粗收益, 經營費, 農外收支 農家經濟 指標 〃
	科學技術廳	都市와 農村의 經濟動向을 파악하기 위한 基礎資料	農家經濟指標
	大藏省	經濟動向을 파악하기 위한 基礎資料	〃
	國稅廳	農業所得標準의 작성, 當年度 農家의 收入 및 必要經費 算出을 위한 基礎資料	〃
	文部省	家計費中 學校敎育費의 動向을 파악하기 위한 基礎資料	家計費
	厚生省	被保護 世帶와의 家計費 比較	家計費
	通産省	景氣動向調査의 一環으로서, 個人消費支出의 動向을 파악하기 위한 資料	農家經濟指標

公表範圍	利用機關	利用目的	利用方法및 利用項目
	郵政省	우편요금의 增減에 관한 要因分析 우편자금의 저축원인에 있어서의 農家收支 動向을 파악하기 위한 資料	〃
	其他	各縣의 農家經濟動向을 파악, 所得推計의 基礎資料 農協金融 動向의 參考資料 信用共濟의 事業强化 資料	各種經濟指標

資料 : 日, 農林水產省, 農家經濟調査 解說

表 4－23 日本의 年間 農家經濟報告 利用狀況

公表範圍	利用機關	利用目的	利用方法및 利用項目
全國計, 都府縣經營耕地規模別	農林水產省 大臣官房	「農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 「農業觀測」「農產物需要와 生產의 長期豫測」 등의 基礎資料 및 自立經營의 표준적 指標, 農產物價格 政策의 作成資料	1) 農家經濟의 관측과 농업경영의 동향 및 農業經濟 展望 2) 農業生產性 等 動向 3) 農業 및 농가의 粗投資 動向 項目別家計費, 農家資金動向
全國農業地域別, 都府縣別	農蠶園藝局	水田利用 再編對策 資料	農業經濟指標
	經濟局	「農林金融 動向」의 基礎資料	농가의 자금구성 豫貯金, 借入金 저축성향 등
全國計, 都府縣經營耕地規模別,	構造改善局	土地改良事業에 관한 經濟效果 測定	토지개량사업 실시지구에 있어서의 토지개량투자 효과 推計
全國農業地域別, 都府縣別		農業者年金 財政再計算의 基礎資料	農業者年金 연령별, 경영주, 후계자별 加入狀況과 保險料 및 給付金 等
		農地評價基準 檢討資料, 「稅制改正에 관한 要望」의 基礎資料	農地純收益, 限界純收益의 算定,

公表範圍	利用機關	利用目的	利用方法및 利用項目
	食糧廳	農業 패리티(Parity) 指數算出의 基礎資料	조세공과 諸負擔率 指數採用品目選定 農家經濟의 總括, 農業, 農外收支, 家計費, 分析指標 等
	水産廳	漁業의 動向 등에 관한 年次報告	農家經濟의 總括과 分析指標
	林野廳 地方農政局	林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 地域農業 情勢報告의 基礎資料	〃 「農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에 準함
	經濟企劃廳	年次經濟報告作成, 國民生活白書作成, 國民所得統計 및 國富調査의 基礎資料	主要經濟指標 再生産可能한 有形固定資産의 保有額

表 4－24 日本의 農家形態別 農家經濟報告 利用狀況

公表範圍	利用機關	利用目的	利用方法및 利用項目
全國, 都府縣, 農業地域別, 農業經營組織別, 專兼業別 農業專從狀態別, 自立經營農家의 農家經濟	農林水産省 大臣官房	農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	農業經營 組織別, 經營規模別, 專兼業別, 農家經濟指標
	構造改善局	地域經營 類型의 策定, 農業構造 改善 事業의 策定 資料	〃
	農蠶園藝局	果樹災害融資 決定 參考資料 農業改良 普及計劃, 農業普及事業의 資料	果樹經營農家의 經營, 經濟內容
	畜産局	酪農近代化 基本方針의 作成資料	酪農經營農家의 經營, 經濟內容
	林野廳	林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 作成資料	林業經營과 農業經營 組織 등의 收益性 比較
	地方農政局	地方農業情勢報告의 作成資料	專兼業別 所得水準, 農業生産性指標, 經營組織別 農業經營 經濟內容

第 5 章

要約 및 結論

1. 農家經濟調査의 現況

初期의 農家經濟調査는 1944 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어 1962 年 이전까지는 農事院, 韓國銀行, 農協中央會, 農水產部 등 4 개 機關에서 각각 분리 실시하여 왔으나 1962 년 統計法 公布實施와 함께 農水產部가 전담하여 農家經濟調査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1980 년 農家센서스結果를 기초로 1982 년에 새로이 標本設計된 現行 農家經濟調査에서는 全國 200 개 調査地區에서 2,000 戶 標本農家를 선정하여 調査하고 있는데 本調査를 위한 調査機構는 中央에 農水產統計官室 流通經濟統計擔當官室이 있고 地方에는 農水產 道統計事務所와 市郡出張所 그리고 駐在 調査員의 體系로 되어 있다. 現在 農家經濟의 調査樣式은 日計簿와 原簿의 2 가지가 있어서 日計簿는 標本農家에 비치되어 그날 그날의 農家經濟의 動態를 農家에서 直接 記帳하는 調査帳簿이고 原簿는 年初와 年末 年 2 回에 걸쳐 調査員이 실제로 직접 조사하여 記帳하는 調査簿로 農家財產의 利用實態, 活動狀態, 在庫農產物, 在庫生產資材, 現金, 準現金 및 借入金 狀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帳簿이다. 本硏究에서는 農家經濟調

査가 過去에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어떠한 內容들이 蒐集調査되어 왔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調査時期 調査機關別로 農家經濟調査內容의 變化過程을 檢討하였다.

2. 農家經濟性格變化에 따른 農家經濟調査

零細小農構造를 가진 韓國農業은 1962년부터 시작된 經濟開發計劃의 실시로 農業構造面에서 많은 變化를 가져 왔으며 農家 및 農業人口의 격심한 감소와 함께 農業의 機械化 資本化가 확대되면서 農家經濟의 性格에도 많은 變化가 있었다. 즉 農業生產構造의 變化, 農家資源利用構造의 變化, 農家消費構造 變化에 따라 農家經濟의 性格도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1970년대의 都市化, 工業化의 촉진과 產業社會의 發展과 함께 自給的 農業이 商業的 農業으로 전환하고 賃貸借農의 확대와 農業生產性 향상 추세에 따라 農家槪念定義에도 많은 변화를 보여 왔는데 1960년도 農業國勢調査時에는 個人農家와 準農家로만 農家가 分類되었으나 1970년 農業센서스나 1975년 簡易 農業센서스에서는 個人農家, 準農家뿐 아니라 專業農家, 兼業農家, 營農形態別 農家等으로 農家의 槪念이 세분화되었다. 또한 1980년 農業센서스에서는 個人農家의 定義도 收入槪念을 도입하여 年間 總收入中 複合經營한 農業收入이 農家로서 定義된 各項目別 收入보다 많은 家口는 個人農家로 定義하였다.

農家經濟調査의 對象인 標本農家의 耕地規模別 分布變化를 살펴보면 1961년 이래로 每年 耕地規模가 큰 階層은 증가하는 반면에 耕地規模가 작은 零細農, 小農階層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같이 農業內部의 여건변화로 인한 農家經濟의 槪念 및 性格變化에 대응하여 主要農業經濟指標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農家經濟調査의 實質業務도 修正 補完되어야 할 것이다.

3. 農家經濟調査帳簿의 項目分類上 問題點과 改善方案

가. 日計簿調査上의 問題點

(1) 現金이나 物品을 외상으로 貸與한 후 대여금回收가 불가능할 때 현재는 家計費中 其他雜支出로 처리하는데 財産的 손실로 보아 이를 財産的 支出로 분류 처리함이 타당하다.

(2) 외상으로 物品을 구입하여 購入時와 返濟時 物品價格에 차이가 생겼을 때 잉여분은 事業外 收入中 其他雜收入으로 損失은 家計費中 雜費로 처리하는데 이러한 差額은 단지 時價變動에 의한 金額이며 실제로 農家收入이나 支出은 없으므로 불합리하다.

(3) 大動物 폐사를 家計費中 其他支出로 記帳 處理하나 財産의 損失이므로 財産的 支出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4) 잣나무, 밤나무 등 有實樹에 의한 收入은 兼業收入中 林産物收入으로 구분되나 그 열매를 판매하여 얻는 收入은 農業收入中 果樹收入으로 분류되어 項目分類上 一貫性이 없다.

(5) 農家財産 評價額의 10% 이상 소요된 修理費만 大修理로 인정되므로 評價額의 10%가 넘지 않는 費用은 經常修理費로 分類되어 經營費가 過多支出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調査員의 주관에 의해 農家財産의 耐用年數가 변경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修理費는 大修理로 分類處理토록 하는 方案이 보다 現實的이다.

(6) 項目分類上 問題點으로 파와 같은 조미채소는 其他菜蔬로 分類되나 고추, 마늘, 양파와 같은 조미료로 분류해야 하며 진경(도라지)을 기타 약용작물로 조사하나 실제는 食用으로 대부분 소비되므로 기타 근채류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들깨와 참깨를 참깨부호에 병행 記入하기 때문에 主要食品在庫量 및 消費量調査時 들깨와 참깨를 分類 調査해야 하는 애로점이 있으며 참깨, 들깨가 糧穀消費量表에는 *kg*單位로 되어 있으나 收入支出表에는 ℓ로 되어 있다. 따라서 들깨부호의 新設과 單位統一이 요망된다.

(7) 他農家에 貸與해 주었거나 賃借한 大動物을 판매하여 他農家에 사육 수고비를 지급하거나 他農家로부터 수고비를 받았을 때 현재는 農業勞賃支出과 勞賃收入으로 分類 記錄하는데 이러한 收入과 支出에 대한 記錄을 명확히 하기 위한 收入 支出簿號의 新設이 요청된다.

나. 原簿調査上의 問題點

(1) 年中에 購入한 大農機具에 대해서는 減價償却을 하지 않으므로 사용한 個月數만큼 減價償却을 農業經營費에 計上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農家에서 共同 購入하여 사용하는 大農具의 지분란 및 사용비율난이 없어서 共用 農機具資產이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분란 및 사용비율란 新設이 요망된다.

(3) 賃借 또는 賃貸한 大動物에 대한 調査基準 및 調査欄이 없어서 貸與되어 있는 大動物 評價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賃借 혹은 賃貸한 大動物 評價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調査基準과 調査欄을 設定할 필요가 있다.

(4) 事業外收入을 얻는데 사용된 施設物, 大農機具에 대한 減價償却은 家計費에 포함되어 家計費가 過大評價될 우려가 있으므로 農業用 施設物 大農機具의 使用比率欄을 현재의 農業用, 家計用比率欄外에 兼業用比率欄도 추가 신설할 필요가 있다.

(5) 收益을 目的으로 農家에서 기르고 있는 정원수는 農家資產에 포함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6) 비닐, 연탄, 油類 등의 農業生產資材 在庫量이나 새끼줄, 가마니, 볏짚 등의 在庫農產物調査가 누락되어 農業經營費가 過大 評價될 우려가 있으며 在庫農產物表에서도 벼, 쌀의 調査品名을 일반벼, 통일벼, 일반쌀, 통일쌀로 세분화하여 評價上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7) 農業用 施設物中 슬레이트집이나 보온덮개, 블록조, 지주 등에 대한 耐用年數가 調査要領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減價償却에 어려움이 있다.

4. 農家財産의 評價

(1) 日本에서는 100萬엔 以上되는 兼業用 建物이나 自動車等을 農家財産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韓國의 農家經濟調査에서는 兼業用財産은 農家財産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兼業用財産을 賣却했을때 處理基準이 모호하다.

(2) 農水産部에서는 農業用土地를 편의상 時價로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日本에서는 年初 현재의 法定評價額 즉 地方稅法에 의한 固定資産稅의 課稅標準 評價額에 의해 土地를 評價한다. 그러나 土地의 評價는 農家所得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評價方法上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3) 農家經濟調査에서는 農業用施設物 및 大農機具의 評價를 費用價 또는 再調達價方法에 의하여 評價하나 日本에서는 土地 이외의 固定資産은 取得價格에 의해 평가함을 原則으로 한다.

(4) 소와 같이 價格變動이 심한 大動物을 時價로 평가하여 價格變動에 의한 非實現所得을 農家所得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日本에서는 取得價格을 基準으로 年初 現在價 成長에 의한 年中增殖額과 減價償却을 加減하여 年末 評價額을 산출한다.

(5) 大動物을 時價로 평가하면 年度末 再評價額 成長에 의한 增殖이나 減價償却이 이미 時價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成長에 의한 增殖分과 減價償却을 加減하여 大動物을 評價하는 것은 모순이다.

(6) 在庫農産物과 在庫生産資材를 農家經濟調査에서는 時價로 評價하는데 時價로 評價함으로써 時價變動에 의한 非實現所得이 農家所得에 포함된다. 그런데 日本에서는 未處分農産物에 대해서는 쌀(基準이 되는 公定價格을 地域別로 告示함)을 제외한 모든 農産物을 生産原價로 評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生産原價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生産最盛期의 時價인 農家庭先販賣價格으로 評價한다. 그리고 農業生産資材는 年度內 平均單價로 評價하여 時價變動에 의한 農家所得 영향을 배제하고 있다.

(7) 닭, 오리, 토끼, 개등 小動物의 年中增減額은 農家所得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8) 減價償却이 필요한 農家資産에 대한 殘存價格率이나 耐用年數를 현실에 맞도록 새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5. 農家所得의 評價

(1) 農家所得의 相當部分은 現金收入이 아닌 現物收入이며 家計에 소비하는 生産現物이나 在庫農産物增減, 大動植物增殖도 農家所得에 포함되나 農家에서는 이들 收入을 所得槪念으로 인식하지 않고 財産增殖槪念으로 생각하여 農家所得이 過大 評價되고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따라서 農家經濟調査에서 所得集計過程의 홍보활동과 아울러 現物所得 등의 非實現所得을 現金所得等의 非實現所得과 구분하여 발표 公表하는 方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在庫農産物, 在庫生産資材, 大動植物 등을 時價로 평가하기 때문에 時價變動이 심한 경우 農家所得에 영향을 미치므로 일률적인 時價評價方法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3) 農家의 非經濟活動으로 인한 收入 즉 사례금, 송금보조, 피증보조, 퇴직금 등의 移轉收入도 農家所得에 포함되어 있는데 移轉收入은 長期的 觀點에서 農家所得에서 제외시키는 問題가 硏究 檢討되어야 한다.

6. 農家의 資金調達과 運用

(1) 日計簿의 動態計算에 의한 「農家經濟剩餘」와 原簿의 靜態計算의 最終結果인 「農家財産의 純增減額」은 理論的으로 일치해야 한다.

(2) 1984년 農家經濟調査結果에 의한 農家資金調達과 運用을 살펴보면 經營收支의 결과인 「農家經濟剩餘」와 財産的收支의 결과인 「農家財産

純增減額」이 불일치함으로 해서 665,441원 즉 4.8%의 差額이 생겼다. 이렇게 「農家經濟剩餘」와 「農家財產純增減額」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經營外의 損益이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3) 農家의 資金調達과 運用額의 일치를 위해서 動態計算에 따라 算出된 「農家經濟剩餘」에 經營外 損益 즉 資產處分 및 分割에 따른 利益이나 損失 그리고 偶發損失 등을 加減한 「農家經濟純剩餘」를 算出하여 靜態計算의 결과인 「農家財產 純增加額」과 일치시키는 조작을 행하여야 한다.

(4) 農水產部의 農家經濟調査는 經常的收支와 財產的收支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않다. 즉 예로서 도난, 분실 등 偶發損失은 財產的 損失로 구분되어야 하나 家計費支出에 포함되어 經常的 收支로 分類 調査되고 있다.

7. 農家經濟調査統計 活用增大方案

가. 資料蒐集上의 問題點

(1) 農家經濟調査는 調査內容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調査內容에 숙련되기 위해서는 많은 勞力과 時間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調査員들의 勤務年數가 1년 이하되는 調査員이 38.3%나 되며 專擔調査員의 移動도 심하다. 따라서 調査員들의 사기를 높여 農家經濟統計의 正確度를 높이기 위해서 專擔調査員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2) 全國 調査員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設問調査結果를 보면 같은 調査內容에 대하여 道間에 해석하는 方式이 서로 相異할 뿐 아니라 道內에서도 서로 다르게 이해하여 非標本誤差가 발생하는 原因이 되므로 全國 調査員들에 대한 定期的인 敎育이 반드시 필요하다.

(3) 標本農家中 調査에 非協助的이거나 記帳能力이 없는 農家도 13.9%나 되는데 非標本誤差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農家들은 標本農家에서

제외하여 代替하는 方案을 檢討할 필요가 있다.

나. 標本誤差와 非標本誤差의 檢討

(1) 農家經濟調査와 같은 標本調査는 調査에 의해 얻어진 結果가 사실 그 自體가 아니고 推定値이므로 반드시 標本誤差가 발생하는데 이 誤差의 크기를 감안하여 結果値를 解析 이용해야 한다.

(2) 1985년도 農家經濟調査 主要項目의 精度를 살펴보면 農家所得, 農業所得, 農外所得, 農業經營費等의 精度는 비교적 높았으나 農外所得을 구성하는 兼業所得, 事業外所得 등의 標本誤差는 精度가 낮았다.

(3) 標本誤差는 그 크기를 추정할 수 있으나 非標本誤差는 誤差의 程度 및 發生原因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標本誤差보다 더욱 問題가 되고 있다. 이러한 非標本誤差의 發生原因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調査員 能力 이상으로 業務量이 過多할 경우에 非標本誤差가 발생할 여지가 많으며 調査員들에 대한 處偶改善도 非標本誤差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調査員들이 調査方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 調査에 임하는 자세가 성실하지 못하다면 非標本誤差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調査員들을 對象으로 調査方法과 調査의 重要性에 대한 教育을 定期的으로 실시해야 할것이다.

다. 農家經濟調査 統計活用上의 問題

(1) 統計資料에 대한 不信의 原因으로 이 統計에 대한 認識不足이 없지 않은 바 統計利用者는 統計가 지닌 實證力을 過信하는 나머지 結果値가 絶對的인 信賴性을 가진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즉 統計値에 대한 結果만을 過信하여 무엇때문에 이러한 統計値가 발생되었으며 이러한 結果들이 지닌 意味가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분석없이 이용함으로써 이것이 統計不信의 原因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이러한 統計의 不信感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統計作成過程의 홍보활동과 더불어 統計資料의 發表와 함께 統計資料의 分析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3) 전국적인 結果만이 생산되는 現農家經濟統計를 業態別, 地帶別, 地域別로도 統計値가 다양하게 發表 이용될 수 있도록 標本이 設計되어야 하며 統計資料의 整備 및 分析을 위해서 統計分析 상설전담기구를 農村經濟研究院에 設置 運營할 필요가 있다.

附表 1 農家經濟調査 帳簿의 項目分類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區 分	問 題 點	改 善 方 向
日計簿	回收가 不可能한 대여현금이나 물품을 家計費中 其他 雜支出로 處理	財產的 支出로 分類 處理
	借入時와 返濟時 時價差異가 있는 現物負債를 事業外收入中 其他雜收入이나 家計費中 雜費로 處理	이러한 差額은 단지 時價變動에 의한 金額이므로 借入時 評價額으로 處理해야 함.
	大動物 폐사를 家計費中 其他支出로 기장함.	財產的 損失이므로 財產的 支出로 處理해야 妥當함.
	잣나무, 밤나무등 有實樹 收入은 兼業收入 그 열매를 販賣하여 얻은 收入은 農業收入임.	收入 項目의 統一 必要
	農家財產 評價額의 10 % 以上 所要된 修理費만 大修理로 인정됨.	調査員 주관으로 耐用年數가 변경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10 % 넘지 않는 費用도 大修理로 處理토록 하는 方案 검토
	파와 같은 조미채소가 其他菜蔬로 分類됨.	고추, 마늘, 양파와 같이 조미료로 분류되어야 함.
	들깨와 참깨를 참깨부호에 병행 記入함.	들깨부호 新設 要望됨.
	참깨, 들깨가 양곡소비량표에는 kg단위로 收入, 支出表에는 ℓ로 되어 있음.	單位統一 必要

區 分	問 題 點	改 善 方 向
	질경 (도라지)을 기타약용작물로 분류조사	대부분 食用으로 消費되므로 기타근채류로 分類되어야 함.
原	임차 혹은 임대한 大動物을 販賣하여 他農家로부터 사육 수고비를 받거나 他農家에 수고비를 지급했을때 收入, 支出을 기록할 항목이 모호함.	收入, 支出簿號 新設 要望
簿	年中 購入한 大農機具에 대한 減價償却을 하지 않음.	使用한 個月數만큼 減價償却을 農業經營費에 計上해야 함.
	共同 購入하여 使用하는 大農具의 지분란 및 使用比率欄이 없음	지분란 및 使用比率欄 新設 要望
	賃借 혹은 賃貸한 大動物 評價基準 및 調査欄이 없음.	調査基準과 調査欄 設定할 必要가 있음.
	農業用 施設物 大農機具의 使用比率欄에 農業用, 家計用 比率欄만 있음.	兼業用 比率欄도 追加 新設해야 함.
	收益을 目的으로 農家에서 기르는 정원수를 農家資産에서 除外하고 있음.	정원수 農家資産에 포함하여 評價하는 方案을 檢討할 必要가 있음.
	비닐, 연탄, 유류등 농업생산자재나 새끼줄, 가마니, 볏짚등 재고농산물 조사가 누락되어 있음.	이러한 품목을 조사할 항목 신설이 요망됨.
	재고농산물표에서 벼, 쌀의 조사품목이 세분화 되어 있지않음	일반벼, 통일벼, 일반쌀, 통일쌀로 細分化 해야 함.
	슬레이트집, 보온덮개, 불복조, 지주등에 대한 耐用年數가 明示되어 있지 않음.	耐用年數를 算定하여 明示할 必要가 있음.

附表 2　　農家財産評価上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區　分	問　題　點	改　善　方　案
固定資産의 評　價	兼業用 財産은 農家財産에서 除外되므로 兼業財産의 賣却收入 處理基準이 없음.	一定金額以上의 兼業財産은 農家財産에 포함시킬 必要가 있음.
	大動物 評價를 時價로 評價하여 價格變動에 의한 非實現所得을 農家所得에 포함시킴.	소와 같이 價格變動이 심한 大動物은 過去 2～3年間 去來價格의 移動平均値나 그해 平均 去來價格을 評價基準으로 삼는 方法이 硏究 檢討될 必要가 있음.
	大動物을 時價로 評價함에도 불구하고 成長에 의한 增殖이나 減價償却도 하고 있음.	時價에 이미 成長에 의한 增殖과 減價償却이 반영되었으므로 必要없음.
	減價償却이 必要한 農家資産에 대한 殘存價格率이나 耐用年數가 現實에 맞지 않음.	現實에 맞도록 調整할 必要가 있음.
流動資産의 評　價	在庫農産物과 在庫生産資材를 時價로 評價하여 非實現所得이 農家所得에 포함됨.	一律的으로 時價로 評價하면 農業收入이 過大評價된 우려가 있으므로 時價에 영향을 받지않는 標準價格이나 平均價格을 適用할 것도 評價의 한 方法으로 檢討할 必要가 있음.
	닭, 오리, 토끼, 개등 소동물의 年中 增減額은 農家所得에 포함되지 않음.	小動物의 增減額도 原則的으로는 農家所得에 포함시켜야 함.

〈 附 錄 〉

농가경제조사 업무개선에 관한 설문조사표

1. 일반사항

조사원 연령 _____세

조사원 근무년수 _____년

(시) (읍) (부락)

조사지구 소재지 _____도 _____군 _____면 _____리

조사지구 형태 _____지대 _____형태

2. 귀하의 조사지구 표본농가 중 기장능력이 없거나 비협조적인 농가는 몇이나 됩니까? _____농가

3. 귀하의 조사지구 형태는 1980년 농업센서스를 기초로 구분되었던 바 현재의 조사지구가 당시의 영농형태와 변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했음 _____변하지 않았음 _____

변하였다면 어떤 형태로 변하였읍니까?

_____지대 _____영농형태

4. 현재의 조사요령에 의거하여 대농기구표에서 추가되어야 할 대농기구와 삭제되어도 좋다고 생각되는 농기구들을 열거하여 주십시오.

추가될 농기구 :

삭제될 농기구 :

5. 표본농가가 마을에서 공동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농기구에 대해서도 재산평가 및 감가상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다 _____ 안한다 _____

하신다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6. 연중에 구입한 대농기구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읍니까?

한다 _____ 안한다 _____

감가상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7. 대동물표의 연중 증감상황에서 대동물 성장에 의한 증가나 감소도 평가하십니까?

한다 _____ 안한다 _____

평가하신다면 증가액을 농가소득에 합산하십니까?

한다 _____ 안한다 _____

8. 대동물을 평가하실 때 연말평가액에서 연초평가액을 차감한 후 감가상각도 하도록 되어있는데 감가상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 _____ 필요없다 _____

필요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9. 귀하는 임차 또는 임대한 대동물도 원부에서 평가하고 있읍니까?

한다 _____ 안한다 _____

평가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10.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대동물이 폐사하였을 경우 원부와 일계부상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계십니까?

11.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농가자산 중에서 내용년수나 잔존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항목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12. 임차료나 임금을 받은 후 판매했을 경우 무슨 부호를 사용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13. 재고로 농가에서 연말에 보유하고 있는 비닐, 골재, 연탄, 유류 등은 재고생산자재로 평가하고 있읍니까?

한다 _____ 안한다 _____

평가한다면 어떤 항목으로 분류합니까?

14. 농업이외에 사용되는 건물, 기계, 선박 등의 농외고정자산을 매각해서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일계부에서 무슨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입합니까?

15.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가구, 가재, 패물 등을 매각하여 수입이 발생했을 때 일계부에서 무슨 항목으로 처리합니까?

16. 귀하의 조사지구의 표본농가에서는 작년에 농가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만큼 퇴직금, 축의금, 조의금을 받은 농가가 있었읍니까?

있었다 _____ 없었다 _____

있었다면 발생건수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_____ 건

내 용 :

17. 문화용품 보유현황표에서 문화용품으로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품목과 삭제되어야 할 품목들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추가될 문화용품 :

삭제될 문화용품 :

18. 현물 부채의 평가액 계상에서 차입시와 반제시 현물량은 같으나 가격변동으로 평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19. 기타 일계부와 원부 기입상에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參 考 文 獻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 各卷

_____, 「農家經濟調査要領」, 1985.

_____, 「日本農業統計用語集」 pp.191-230.

農協中央會, 「農業年鑑」, 1962 pp. Ⅲ - 87 - Ⅲ - 99.

韓銀調査部, 「農家經濟調査綜合報告(1953~1962)」, 1963 pp.15-35.

農業銀行調査部, 「農家經濟調査報告」, 1960 pp.1-29.

_____, 「農家經濟調査報告」, 1961 pp.3-29.

日本農林水產省, 「農家經濟調査報告」, 1985.12

日本農林水產省, 「農家經濟調査解說」, 1980.3

_____, 「調査原簿 の 作成要領」, 1982.3

_____, 「母集團 整備要領」, 1980.12

_____, 「日計簿 の 月別取りまとめ要領」, 1982.3

大槻正男, 「農業簿記」 昭和 24 年 5 pp.107-124.

票村哲象, 今井鐳藏, 「複式簿記」 昭和 48 年 6 pp.2-24.

蘇眞德, 「會計學原論」, 博央社, 1971.12 pp.238-252.

宋吠永, 「會計原理」, 法文社, 1964.3 pp.175-186.

趙益淳, 「新簿記學」, 博英社, 1964.3 pp.148-156.

申文澈, 「新簿記原理」, 博英社, 1969.12 pp.176-183.

奉明根, 「農村調査論」, 螢雪出版社, 1981, pp.26-49.

朴弘來外 2人, "現行標本設計에 대한 檢討," 「農業統計 改善에 관한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0.12

崔洋夫, "農家經濟 및 農產物 生產費統計 改善方向," 「農業統計改善에 관한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0.12

W.G.Cochran, 「Sampling Techniques」, 1967 pp.72-86.

R.J.Jessen, 「Statical Survey Techniques」, 1978 pp.1-31.

J.B.Penson, Jr. 「Agricultural Finance」, 1980 pp.13-35.

研究報告 117

農家經濟調査業務改善研究

1986년 7월

발행인 金 榮 鎭

발행처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3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1979년 5월 25일 제5-10호

전 화 962-7312~5

인쇄처 東洋文化印刷株式會社

出處를 明示하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 및 複製는 禁함.